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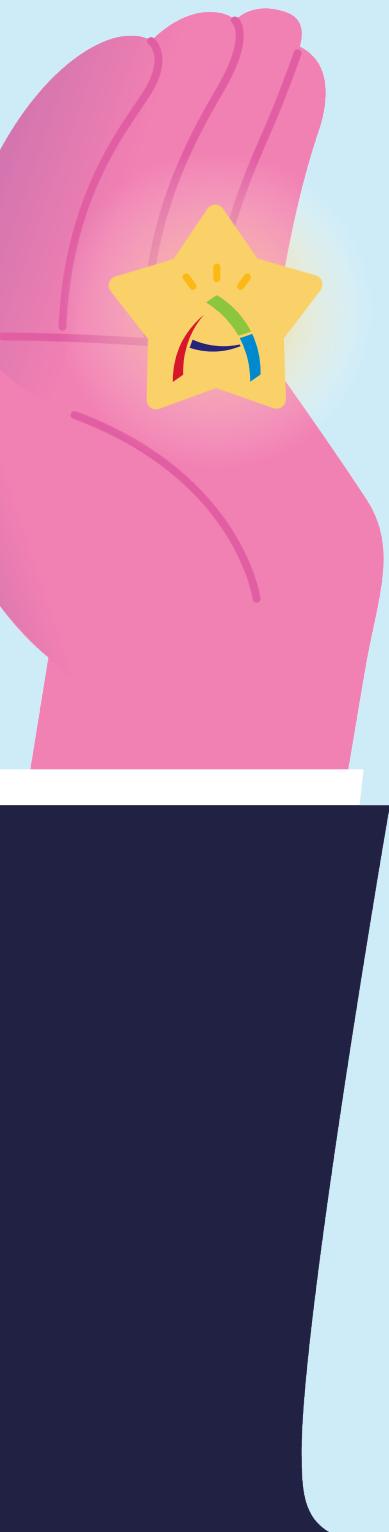
2025년

아하(A-HA)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

# 아하(A-HA) 장애인복지정보안내

Active support - Happiness for All, A-HA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아하

# 목 차

## CONTENTS

### 개요

08

### 01 소득지원

09

#### 중앙

- 장애인연금 11
- 장애수당 13
- 장애아동수당 15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17

#### 지자체 (전북)

- 순창 |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18

### 02 주거지원

19

#### 중앙

-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21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22

### 03 건강·의료 · 임신·출산

23

#### 중앙

- 장애인 산소치료 요양비 검사 면제 25
- 장애인의료비지원 25
-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26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27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28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29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30
-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CBR) 31

#### 지자체 (전북)

- 전북 | 전북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32
- 전북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원(장애인화 건강검진) 32
- 전주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32
- 익산 | 여성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사업 33
- 익산 |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 33
- 완주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33
- 부안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33
- 부안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33
- 군산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34
- 김제 |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34
- 김제 |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34
- 임실 |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감면 34
- 임실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 34

<b>04 교육·양육</b>	<b>중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37</li> <li>· 여성장애인교육지원 37</li> <li>·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38</li> <li>·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38</li> <li>· 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49</li> <li>·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49</li> <li>· 장애아동양육수당 40</li> <li>· 장애아가족양육지원 40</li> <li>· 장애아보육료지원 41</li> <li>·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42</li> <li>·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42</li> <li>·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43</li> <li>· 방과후보육료지원 45</li> <li>·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 대출 채무면제 46</li> </ul>
---------------------	-----------	--

<b>지자체 (전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47</li> <li>· 익산   장애영유아거주시설 간병비 지원 47</li> </ul>
---------------------	---

<b>05 일자리 및 창업지원</b>	<b>중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일자리 지원 51</li> <li>·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53</li> <li>·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54</li> <li>· 장애인 창업육성 55</li> <li>·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56</li> <li>· 중증장애인지원 고용(훈련수당) 57</li> <li>·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58</li> <li>·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59</li> <li>· 보조공학기기지원 60</li> <li>·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61</li> <li>·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지원인 전환지원 62</li> <li>· 장애인 사이버 훈련 운영 63</li> </ul>
------------------------------	-----------	--

<b>지자체 (전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산   발달장애인 기간제 일자리사업 65</li> <li>· 익산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지원 65</li> </ul>
---------------------	--

<b>06 세제 및 공공요금 감면</b>	<b>중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69</li> <li>1.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69</li> <li>2. 산출보험료 경감 69</li> <li>3.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69</li> <li>· 장애인 의료비 공제 70</li> <li>· 장애인 보험료 공제 70</li> <li>·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70</li> <li>· 소득세 공제 70</li> <li>·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72</li> <li>· 상속세 상속 공제 72</li> <li>·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업무(공공요금 감면 등) 73</li> <li>·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73</li> <li>· 전기요금 할인 74</li> <li>· 도시가스 요금 할인 74</li> <li>· 유선통신 요금 감면 74</li> <li>· 이동통신 요금 감면 74</li> <li>· 철도 요금 감면 76</li> <li>· 도시철도 요금 감면 76</li> <li>·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76</li> <li>· 항공요금 할인(민간) 77</li> </ul>
------------------------------------	-----------	--

<b>지자체 (전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읍   심한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79</li> <li>· 남원   심한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79</li> <li>· 무주   심한장애인 장애인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79</li> <li>· 군산   군산시 수도요금 감면 79</li> <li>· 완주   중증장애인 유선방송 이용료 지원 79</li> </ul>
---------------------	--





**07  
이동 및  
편의지원,  
차량 관련 등**

81

<b>중앙</b>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 사업 안내	83
	· 장애인 운전교육사업 안내	85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85
	· 승용차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86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86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87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88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88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89
	·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행)	89

<b>지자체 (전북)</b>	· 무주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90
	· 부안   한국수어통역센터 차량 운영	90
	· 임실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	90
	· 정읍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편의 경사로 설치 지원	90
	· 정읍   중증신장장애인 혈액 투석 교통비 지원	90

**08  
자립생활**

91

<b>중앙</b>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93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94

**09  
문화체육**

95

<b>중앙</b>	· 장애인문화 예술지원	97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97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b>지자체 (전북)</b>	· 군산   군산 캠핑장 사용료 감면(30%)	98
	· 부안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98

**10  
일상생활  
지원**

99

<b>중앙</b>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101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의료급여)	102
	· 통신증계서비스 제공	102
	· 시·청각 장애인용 TV보급사업	103
	· 장애인방송신청 지원	103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장애인재활지원사업)	104
	·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지원(장애인재활지원사업)	104
	·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장애인재활지원사업)	104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105
	· 최종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106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107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108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08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109
	·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110

<b>지자체 (전북)</b>	· 군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111
	· 김제   유료방송(이어드림) 이용요금 지원사업	111
	· 남원   시각장애인 이어드림 서비스	111
	· 남원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111
	· 부안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112
	· 순창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112
	· 익산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112
	· 장수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	113
	· 전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113
	· 전주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	113
	· 정읍   시각장애인 이어드림서비스	113
	· 정읍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114
	· 정읍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114
	· 진안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114

**11  
바우처**

115

<b>중앙</b>	· 장애인활동지원 117
	·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118
	· 발달재활서비스 120
	·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121
	· 언어발달 지원사업 122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 123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25
	· 에너지바우처(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할인) 127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129
	· 산림복지 이용권 130
	· 평생교육 바우처지원 131
	· 문화바우처사업(통합문화이용권) 132
<b>지자체 (전북)</b>	· 정읍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시 추가 지원) 133
	· 순창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지원 133
	· 임실   취약계층 명절위로금(상품권)지원 133

**12  
기관 운영  
및 지원**

135

<b>중앙</b>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37
	· 권역재활병원 137
	· 장애인취업 알선 138
	· 장애인복지관 운영 138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139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39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140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40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14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41
	· 장애인 거주시설 142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42
	·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143
	·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143

**부록**

전북 기관  
시설·단체 연락처

·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144
· 장애인복지관 145
· 장애인협회(도 단위) 146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47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148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48
·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149
·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15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151
· 최종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52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153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 154
· 장애인 거주시설 155
·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56

# 개요

## INTRODUCTION

### 01 책자의 의미

『아하(A-HA) 장애인복지정보안내(2025년)』는 대한민국 장애인 개개인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채로운 복지시책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각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를 한데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복지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돋는 데 핵심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02 자료 출처 및 수집 과정

본 안내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는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집 및 정리되었습니다.



#### 주요 기반 자료

-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kr)”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정정\_250605.pdf”
-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및 14개 시군의 장애인 관련 주무 부처에서 제공받은 정보



#### 정보 보완 및 심화

- 위 주요 기반 자료 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 보건복지부, 전북특별자치도, 시청자미디어센터, 전북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해당 분야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직접 탐색 및 비교하여 자료를 수집·보완하였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

- 2025년에 발표 및 발간된 자료를 기초로 활용
- 각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보 정확성 다각도 검증



#### 독자 접근성 강화(QR 코드 활용)

- 정보제공처와 추가정보의 쉬운 접근을 위한 QR코드 배치

---

# 01

## 소득지원



---

### 중앙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인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 지자체(전북)

순창 |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 01. 소득지원 중앙

###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하는 달 기준,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0,000원
- 부부가구 2,208,000원

####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

\*소득인정액=①월 소득평가액+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월 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20,000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상시근로소득-920,000원)×70%)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 세대별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 평가)

- 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비속(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00,000,000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  
(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 공제)+(금융재산-20,000,000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0,000원 ※인당 적용 아님

- 고급자동차의 기준 ① 차량가액이 40,000,000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②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유의점 :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은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

#### 장애연금 수급대상 제외(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다만, 다음 조건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 포함
  - 직역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애일시금, 비공무상 장애일시금, 비직무상 장애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지원내용

##### 기초급여

- 18세~65세가 되는 전 달까지 수급권 유지하고 있는 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초급여액		
급여 자격(연령)	급여액	비고
18세~ 64세	~ 342,51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65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li> <li>-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음</li> <li>-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li> <li>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li> </ul>

기초급여 감액	
부부감액	내용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342,510원×80%)-8월(원단위 절삭)=274,000원(1인 기준)</li> </ul>
초과분 감액	내용
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 감액하여 지급</li> <li>-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li> <li>-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li> <li>-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li> </ul>

- 1인 수급 시, 차액(20,000원 이하~340,000원 초과)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최소 20,000원에서 최대 342,510원을 지급
- 2인 수급 시, 차액(40,000원 이하~520,000원 초과)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최소 40,000원에서 최대 548,000원을 지급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자격	세부자격	부가급여액	
		연령 65세 미만	연령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생계, 의료수급	90,000원	432,510원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생계, 의료수급	-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	80,000원
차상위초과	일반/주거, 교육수급	80,000원	80,000원
	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	-	150,000원
	일반	30,000원	50,000원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장애인연금

# 01. 소득지원 중앙 장애인수당



## 지원대상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 적용.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2025년 기준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text{일반}/\text{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text{기본재산액}-\text{부채})+\text{승용차 재산가액}\} \times \text{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 (제외 대상)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지원내용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월 6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 월 30,000원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로 신청

### 그 외 대상자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으로 신청

# 01. 소득지원 중앙 장애인아동수당



**지원대상**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 적용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2025년 기준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text{일반}/\text{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text{기본재산액}-\text{부채}) + \text{승용차 재산가액} \times \text{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란?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자격	지급액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0,000원	매월 11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70,000원	매월 110,000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매월 90,000원	매월 30,000원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  
→장애인(아동)수당(생계, 의료급여)로 신청

## 그 외 대상자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  
→장애인(아동)수당(차상위)으로 신청

## 신청 화면따라하기



# 01. 소득지원 중앙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지원  
-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

(자격제한)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응자기관 내규 여신 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증인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 경우

-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 가능(서비스내용 동일)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 자금대여)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절차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jijo.go.kr](http://bojijo.go.kr))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장은 심사 후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해당 금융기관에 추천
- 추천자는 해당 금융기관 방문하여 응자 신청
-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후 응자 실행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결정(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 지원내용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응자요건 및 상환방법

구분	내용	비고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응자불가
대여한도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0,000원 이내 (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0,000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0,000원 이하 (담보범위 내)	* 요건 : 기준 대출금 20,000,000원 이하, 연간 재산세 20,000원 이상 납부 또는 연간소득 6,000,000원 이상
대여이자	고정금리 연 2%	'21년 4월 이전 3%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주의사항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응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	*별도자금으로 자동차 구입 후, 대여 응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 불가

## 지자체 전북지역 지원시책

지 역	순창군	운영기관	연증
사업 명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주기	월별	신청방법	방문, 기타
제공유형	현금지급	신청시기	장애인수당 책정 시
선정기준	관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18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		
지원내용	지급액 : 월 40,000원, 지급일 및 방법 : 매월 20일에 개인별 계좌 입금 지원근거 :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조례(2020.4.17.제정)」 *신규 책정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 02 주거 지원



---

### 중앙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02. 주거 지원 중앙

###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중앙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원인 장애인(지적·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지원형태 : '알선' 또는 '추천'이므로 공식적인 청약 시스템 외 별도 절차가 있을 수 있음
- 지원특징 : 특별공급과 다르게 정기적이지 않고, 공급 시기·물량이 불규칙함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도 문의

**지원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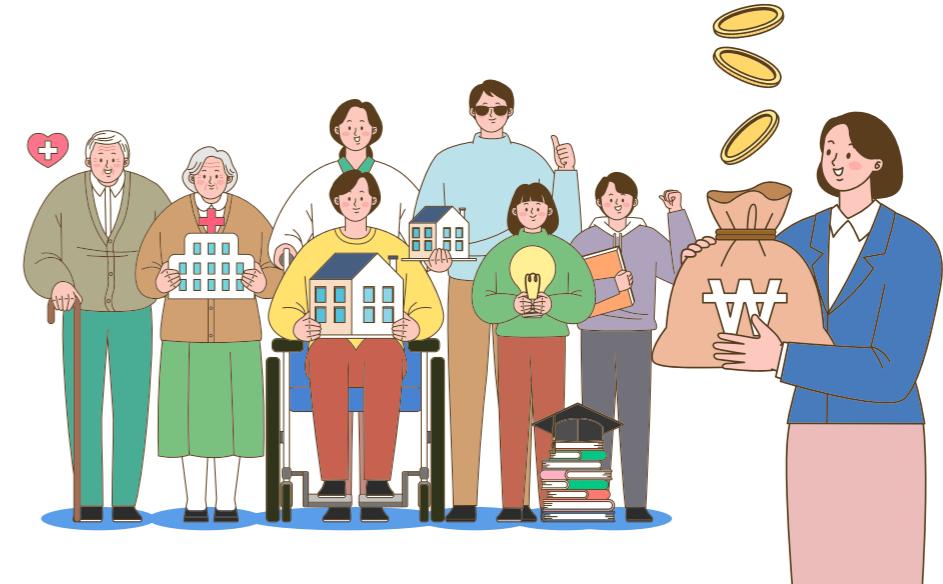
**지원내용**

농어촌지역 주택개조 지원으로 장애인 주거안정권 확보

-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03

## 건강·의료 ·임신·출산



### 중앙

장애인 산소치료 요양비 검사 면제  
장애인의료비지원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장애인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CBR)

### 지자체(전북)

전북 | 전북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북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원(장애인화 건강검진)  
전주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익산 | 여성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사업  
익산 |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  
완주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부안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부안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군산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김제 |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김제 |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임실 |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감면  
임실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

## 장애인 산소치료 요양비 검사 면제

##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호흡기장애인(장애인 등록 외국인 포함)
- 동맥혈가스 또는 산소포화도검사결과, 기준 적합 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 '19.7.1. 이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장애인
  - 내과·결핵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내용****처방전 발급 후 가정용 또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의 월 대여료 지원**

- 건강보험 : 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의료급여 : 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 지원

**신청방법**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의료급여 : 시·군·구청에 신청

**지원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유의사항**

-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하위, 부정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된 경우에 지원

**가능**

-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장애인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내용****지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기관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 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  
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지원내용****지원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영수증 금액이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영수증 확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 그 외의 장애 : 최대 15,000원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 검사비 지원 : 최대 100,000원

**신청방법****(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 서식), 통장사본, 영수증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 :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03.건강·의료·임신·출산** 중앙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중앙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5.1.1.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이상)한 경우 출산비용 지원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지원대상) 2025.1.1.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이상)한 자

직전년도(2024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

(지원불가 대상)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지원 불가

-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태아 1인 기준 : 1,20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기관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http://www.gov.kr)) , 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정부24 신청경로

- 정부24접속→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신청하기

복지로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지원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 장애아동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지급 중단)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휴학생 제외) 졸업 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지원내용** 연간 2,600,000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을 지원

- 본인부담금(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 포함 지원(13.1.1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 준용**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03. 건강·의료·임신·출산 중앙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앙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동 법률 제5조에 따른 장애인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작성한 자

**지원내용**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증증 24회, 경증 4회)  
  
(주장애 관리 서비스)  
-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관리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주장애 관리  
- 제공항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간호, 중간점검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http://www.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  
- 건강모아→검진기관/병(의)원 찾기→특성별 기관찾기→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선택→검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서식 제공)용 지원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03.건강·의료·임신·출산** 중앙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CBR)**



**지자체 전북지역 지원시책**

**지원대상**

1. 법적 등록 장애인
2.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예)의료기관 퇴원 환자, 예비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 지역사회 조기적응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퇴원관리 상담활동, 사회참여 프로그램, 교육 및 2차 장애관리 등
- (지역지원 연계 사업)
- 지역사회재활협의체(회) 및 사례관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통합건강증진사업 연계 등
- (지원사업)
- 장애인 운전지원,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 보조기기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

**신청방법**

(방문 신청) 지정 지역 보건소

지 역	전북특별자치도	운영기간	연중
사업 명	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주기	내원시마다	신청방법	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063-250-2881, 2882)
제공유형	감면	신청시기	내원시
선정기준	진료대상 : 장애유형이나 등급,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		
<b>지원내용</b>		<p><b>진료비 지원</b> (2014년 이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a href="#">&lt;진료내용&gt;</a>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1. 치과영역 경증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를 지원합니다.</p> <p>2.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를 지원합니다.</p> <p>- 뇌병변장애 : 구)1~6급 - 지적(정신지체)장애 : 구)1~3급 - 지체장애 : 구)1~3급 - 정신장애 : 구)1~3급 - 뇌전증장애 : 구)2~4급 - 자폐성장애 : 구)1~3급 - 중복장애인의 경우 위 6개 장애유형, 해당 등급을 포함해야 합니다.</p> <p>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를 지원합니다.</p> <p>4.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p>	

지 역	전북특별자치도	운영기간	연중
사업 명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원(장애인화 건강검진)		
지원주기	년 1회	신청방법	장애인건강검진기관 21개소 서비스 운영 중 (인터넷 예약) 전북 : 군산·남원·진안의료원, 남원노인요양병원, 마음사랑병원(~2026년) ※사전 전화 문의 요망
제공유형	기타	신청시기	년 1회(건강검진 안내 시)
선정기준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장애인 등록 외국인 포함) * 중증장애인 이용 시 별도의 검진 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지원내용	유니버설 진단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 배치 등 장애인 건강검진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 보장		

지 역	전주	운영기간	연중
사업 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주기	1회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신청시기	출생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선정기준	출생(유산·사산 포함) 신고일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지원내용	심한 장애 2,000,000원, 심하지 않은 장애 1,500,000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그 차액 지급		

## 지자체 전북지역 지원시책

<b>지 역</b>	익산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여성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사업(시비 추가)		
<b>지원주기</b>	수시	<b>신청방법</b>	방문
<b>제공유형</b>	현금지급	<b>신청시기</b>	출생신고일 기준 2년 이내
<b>선정기준</b>	관내 등록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b>지원내용</b>	태아 1인당 300,000원 지원		

<b>지 역</b>	익산	<b>운영기관</b>	연초
<b>사업명</b>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		
<b>지원주기</b>	반기	<b>신청방법</b>	희망e음
<b>제공유형</b>	현금	<b>신청시기</b>	출생신고일 기준 2년 이내
<b>선정기준</b>	관내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계속 사업		
<b>지원내용</b>	저소득 장애인 대상 구강검진, 보철, 틀니 등 치료 지원		

<b>지 역</b>	완주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b>지원주기</b>	1회성	<b>신청방법</b>	방문, 전화
<b>제공유형</b>	현금지급, 기타	<b>신청시기</b>	수시
<b>선정기준</b>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배우자		
<b>지원내용</b>	출산, 유산, 사산에 대해 태아 1인 기준 1,000,000원 지원 ※인공 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의 경우 지원 불가		

<b>지 역</b>	부안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b>지원주기</b>	신청방법	방문	
<b>제공유형</b>	현금지급	<b>신청시기</b>	월
<b>선정기준</b>	관내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b>지원내용</b>	투석비 및 혈관시술비 지원		

<b>지 역</b>	부안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b>지원주기</b>	월	<b>신청방법</b>	방문, 전화
<b>제공유형</b>	감면	<b>신청시기</b>	매월 1회
<b>선정기준</b>	부안군 거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세대 중 보험료 22,340원 이하인 세대		
<b>지원내용</b>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자체 전북지역 지원시책

<b>지 역</b>	군산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b>지원주기</b>	1회성	<b>신청방법</b>	방문
<b>제공유형</b>	현금지급	<b>신청시기</b>	연중
<b>선정기준</b>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인 부모		
<b>지원내용</b>	- 심한 장애 : 1,500,000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1,000,000원 이내 (쌍생아 경우 지원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b>지 역</b>	김제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b>지원주기</b>	1회성	<b>신청방법</b>	방문
<b>제공유형</b>	현금지급	<b>신청시기</b>	수시
<b>선정기준</b>	출산일기준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인 부모		
<b>지원내용</b>	쌍생아 경우 지원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b>지 역</b>	김제	<b>운영기관</b>	수시
<b>사업명</b>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b>지원주기</b>	월	<b>신청방법</b>	우편, 팩스, 방문 등
<b>제공유형</b>	현금지급, 기타	<b>신청시기</b>	연중
<b>선정기준</b>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b>지원내용</b>	혈액 및 복막투석비 : 150,000원이내(본인부담액의 1/2)/월/인, 혈관시술비 : 150,000원(본인부담액의 1/2)/월/인, 이식검사비 : 1,000,000원 이내/년/인		

<b>지 역</b>	임실	<b>운영기관</b>	수시
<b>사업명</b>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감면		
<b>지원주기</b>	년	<b>신청방법</b>	전화, 방문
<b>제공유형</b>	감면	<b>신청시기</b>	수시
<b>선정기준</b>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이하 1~3급 장애인		
<b>지원내용</b>	예방접종비 감면(1~3급 장애인 무료) ※1백신과 4백신 중 택1 1회만 무료 감면 - 1백신은 1회 접종 - 4백신은 2회 접종 : 1회만 무료감면, 2회차 접종은 본인 부담		

<b>지 역</b>	임실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		
<b>지원주기</b>	월	<b>신청방법</b>	기타
<b>제공유형</b>	기타	<b>신청시기</b>	국민건강보험공단 일괄추출
<b>선정기준</b>	지역가입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않는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b>지원내용</b>	월 보험료 지원(대납)		

# 04

## 교육·양육



### 중앙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여성장애인교육지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장애아동양육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보육료지원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 대출 채무면제

### 지자체(전북)

전주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익산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간병비 지원

## 04. 교육·양육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중앙



중앙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희망 학생 대상을 진단·평가 실시 후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치료사 채용, 바우처, 치료지원 제공기관(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 치료지원 대상자 신청 가능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신청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참고사항** 전북 내 치료지원 기관 검색은 “전라북도교육청 치료지원카드”(<https://jbe.nhdream.co.kr>)  
<가맹점 조회하기>에서 가능합니다.

중앙

##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서비스 내용**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 여성장애인교육 수행기관

※전북지역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수행기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063-236-8533)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3-837-7300)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지원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선정기준** 대학에서 장애대학(원) 대상 수요조사 후 신청서 제출→

사업전담기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서 적정성 여부 검토 →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내용** (일반교육지원인력)

- 대학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전문교육지원 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실시간 속기, 자막 제작, 소프트웨어 지원 가능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지원부서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중앙

##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지원대상**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 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 정보화 교육을 제공

**신청방법** (전화 신청) 거주지 관할 교육기관  
(온라인 신청) [www.digitallbomuter.kr](http://www.digitallbomuter.kr)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 04. 교육·양육

중앙

### 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중앙

### 장애인아동양육수당



신청 화면따라하기

#### 지원대상

- 국립특수학교(급)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국립특수학교 6개교, 국립대학 부설 학교 40학급
  - 특수교육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기준

-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중증장애 학생 우선 지원  
(방과후교육비, 종일반) 특수교육대상 학생 희망자 전원

####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활동 및 이동보조, 방과후교육 등 지원

#### 신청방법

- 국립 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학교에 신청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중앙

### 장애인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

#### 선정기준

-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  
 ①시각장애, ②청각장애, ③지체장애, ④지적장애, ⑤자폐성장애, ⑥정서행동장애, ⑦의사소통장애, ⑧학습장애, ⑨건강장애, ⑩발달지체, ⑪①~⑨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 참고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 지원내용

- (온라인 지원)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 제공  
 문의처 : 국립특수교육원 ☎ 041-537-1485, 에듀에이블 ☎ 041-537-1485, eduable.net

#### 신청방법

- 국립특수교육원([www.nise.go.kr](http://www.nise.go.kr)) 사이트 신청

#### 처리절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신청 접수→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 양육 영유아  
 (장애등록 외국인 중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재외국민 포함하나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지원내용

- 장애인아동 양육수당(24~85개월) : 100,000원~20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양육수당(가정양육)  
 →장애인아동양육수당 신청  
 ※신청과정 상 기본정보 입력 등과 개인정보활용 동의, 제출서류 입력 등이 있습니다.

중앙

### 장애인아가족양육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선정기준

-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인

- 대상자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2025년 서비스 단가 : 12,180원/시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제외 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장애인가족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 지원내용

-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 :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 1,080시간 초과시 : 전액 본인부담

서비스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 (돌봄서비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휴식지원 프로그램)

-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 04. 교육·양육

중앙

### 장애아보육료지원



중앙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 추가지원대상, 지원 요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 하나,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음. 단,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 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 (주의사항)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증 장애진단서와는 다름, 장애아동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에 장애 소견이 기재되어야 함)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 지원내용

장애아반 편성아동 : 587,000원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 587,000원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

#### 신청방법

(방문 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대상 장애아동의 선정기준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지급증명 조건) 완치된 경우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 첨부, 담당의사와 협의 결정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재학증명서 첨부)

#### 지원내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 외 지원대상 : 월 634,000원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중앙

###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지원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 시스템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http://www.childcare.go.kr)

(방문 신청) 어린이집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 지원대상

- 0~2세 : 종일반 보육료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 3~5세 :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8세까지 지원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

### 지원내용

- 야간연장 보육료**
- 지원단가 :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 시간당 5,000원

#### 지원한도 : 월 60시간

-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이용 가능 시간 :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07:30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 19:30~20:30 사이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 사이 하원 시 이용 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 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을 위한 19:30 이전에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 이용 시간은 전액 부모 자부담, 19:30 이후부터는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

(취학 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 가능 시간은 19:30 ~ 다음 날 07:30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이용 가능 시간은 07:30 ~ 다음 날 07:30

- 주간 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 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 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 보육 일수 / 26일(보육 가능 일수)
  - (예시) 2일 이용한 3세 아동 보육료 지원
    - 지원액 : 280,000원 × 2/26(일) × 150% = 32,310원(원 단위 절삭)
    -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 × 100% 지원

#### 기준 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 04. 교육·양육

**중앙**

### 방과후보육료지원



#### 지원대상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지원하지 않음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의 수급자 (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청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청구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①~⑦까지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 지원내용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맞춤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 : 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 지원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 월 100,000원, 정부미지원시설 사·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

- 월 200,000원 지원
-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 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전화문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 중앙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황유예, 대출 미취업자 원금상환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 지원내용

구분	사망	심신장애인
지원절차	신청→재산조사→면제채무액(면제자격) 확정→비면제채무액 상환→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면제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액 - 상환가능금액</li> <li>* 상환가능금액</li> </ul> <p>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조사된 재산가액-선순위채권액 - 장례 직접 소요액</p> <p>②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 (한정승인 서류상 재산목록 총액-선순위 채권-장례 직접 소요액)에서 민법 제103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li> <li>-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 잔여 대출원금*의 90% 면제</li> <li>-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 잔여 대출원금*의 70% 면제</li> <li>-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li> <li>-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 잔여 대출원금*의 50% 면제</li> <li>-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 잔여 대출원금*의 30% 면제</li> <li>*대출원금 외 이자(향후 발생 포함), 비용 등 전액 면제</li> <li>* 채무면제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li> </ul>
재산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정보 조사 후 상속 재산가액 결정</li> <li>·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 "한정승인 결정문" 상의 재산목록으로 상속 재산가액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기간에 재산 조사가 가능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본인(1인)가준 소득 인정액 산정</li> <li>*본인을 제외한 가구원 소득 및 재산과 가구원에 따른 공제는 미반영</li> </ul>
면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자 또는 채무면제 신청인이 면제되지 않은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 등을 모두 상환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 처리</li> <li>· 자격확인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 또는 분할상환약정 체결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기간에 재산 조사가 가능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본인(1인)가준 소득 인정액 산정</li> <li>*본인을 제외한 가구원 소득 및 재산과 가구원에 따른 공제는 미반영</li> </ul>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상환 :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자격확인통지 후 6개월 이내 일시 상환</li> <li>· 분할상환 :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5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li> </ul> <p>※단, 약정 대상금액 20,000,000원 초과인 경우 10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p> <p>※약정금액 100,000원 이상, 조입금 없음, 분월상환금 월 20,000원 이상</p> <p>※면제되지 않은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 미상환시 상환약정 파기 및 채무면제 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상환 :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자격확인통지 후 6개월 이내 일시 상환</li> <li>· 분할상환 :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5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li> </ul> <p>※단, 약정 대상금액 20,000,000원 초과인 경우 10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p> <p>※약정금액 100,000원 이상, 조입금 없음, 분월상환금 월 20,000원 이상</p> <p>※면제되지 않은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 미상환시 상환약정 파기 및 채무면제 취소</p>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신청(등기우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신청</li> <li>· 오프라인 신청(등기우편)</li> </ul>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서류</li> <li>·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 신청인 등의 신분증</li> <li>· 추가서류</li> <li>· 위임장(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li> <li>· 영주귀국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 등 영주귀국 또는 재외국민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인 경우)</li> <li>· 기타 재단의 서류심사 중 추가제출이 필요한 보완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서류</li> <li>·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의 심신장애인(최초장애판정일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 추가서류</li> <li>· 위임장(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li> <li>· 영주귀국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 등 영주귀국 또는 재외국민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인 경우)</li> <li>· 기타 재단의 서류심사 중 추가제출이 필요한 보완서류</li> </ul>

####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신청화면)

※신청화면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신청

2. 서류 심사 및 재산조사(한국장학재단, 사회보장정보원)

3. 면제채무액(면제자격)확정 및 비면제채무 상환 약정 체결

#### 상담처

(채무면제 일반상담) 한국장학재단 대표상담센터 ☎1599-2000

부실채권의 경우 : 대출상환 상담센터 ☎1599-2250

(신청 후 맞춤형상담) 대출상환상담센터 정상 및 단기연체 ☎1599-2250, 장기연체 ☎1599-2250

**지자체 전북지역 지원시책**

<b>지 역</b>	전주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b>지원주기</b>	월	<b>신청방법</b>	방문
<b>제공유형</b>	현금지급	<b>신청시기</b>	출생신고일 기준 2년 이내
<b>선정기준</b>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b>지원내용</b>	생후 24개월까지 영아 1인당 월 100,000원 지원		

<b>지 역</b>	익산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장애인유아거주시설 간병비 지원		
<b>지원주기</b>	연중	<b>신청방법</b>	희망e음
<b>제공유형</b>	현금	<b>신청시기</b>	연초
<b>선정기준</b>	장애인유아거주시설 입소 장애아동		
<b>지원내용</b>	장애인유아거주시설 입소아동 간병비 지원		

# 05 일자리 및 창업지원



## 중앙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장애인 창업육성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중증장애인지원 고용(훈련수당)
-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 보조공학기기지원
-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지원인 전환지원
- 장애인 사이버 훈련 운영

## 지자체(전북)

- 익산 | 발달장애인 기간제 일자리 사업
- 익산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지원

## 05. 일자리 및 창업지원 중앙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지원대상

일자리 유형	지원대상	비고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형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장애인	
복지일자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사업년도 기준 미취업 전공과 학생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 실습이 가능한 시점부터 참여가능 (대부분 2학기부터 참여를 개시하나, 지역에 따라 1학기 부터 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후 적용 필요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년도 이후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안마수련원 등을 통해 안마 훈련 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 발급 예정자 신청 가능(다만 참여는 자격증 발급 후 가능)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신청 당시 18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선발제외 대상이 아니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시작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면 가능

#### 선정기준

(우선 선발기준)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

- 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 반영
-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지역 참여 경험 포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의 경우 가점 반영

#### (선발 제외 기준)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단, 근로계약서 상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근로계약서 등 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근로계약서 상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 지원내용

구분	사업기간	월 임금			인건비
		근로시간	1월~11월	12월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12개월	주 5일(40시간)	주 5일(37.5시간)	2,096,270원
		12월	주 5일(40시간)	주 5일(37.5시간)	1,965,880원
	시간제	12개월	주 20시간	주 19시간	1,048,140원
		12월	주 19시간	주 19시간	993,980원
복지일자리	12개월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561,680원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12개월	주 5일(25간)	주 5일(23.5시간)	1,313,930원
		12월	주 5일(23.5시간)	주 5일(23.5시간)	1,233,69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12개월	주 5일(25간)	주 5일(23.5시간)	1,313,930원
		12월	주 5일(23.5시간)	주 5일(23.5시간)	1,233,690원

#### 신청방법

장애인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

- 모집공고 : 지자체, 수행기관

####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 05. 일자리 및 창업지원 중앙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지원대상**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sup>1)</sup>

#### 선정기준

- 15세 이상 장애인, 직업상황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 지원요원, 사업장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 '직업적응훈련' 대상자 조건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 중  
· 등록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 매년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 지원내용

##### 직업적응훈련수당 지급 : 월 100,000원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 훈련, 현장중심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등을 포함
- 중증장애인직업재활 통합관리 시스템(vr.koddi.or.kr) 참고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

####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 중앙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중앙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 창업자'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장애인 기창업자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졸업생 중 창업자

#### 선정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예산 집행 적절성,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내, 130,000,000원 한도 대여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 등은 본인부담

감정평가 결과, 지원보증금을 합산하여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00

<sup>1)</sup>2025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규정 : 특수교육법 15조

## 05. 일자리 및 창업지원 중앙

### 장애인 창업육성



**지원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자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창업의지가 높은 장애인(선착순)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성 평가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아이템 사업화 등 평가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지역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신청방법**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온라인 신청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 (장애인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우편, 방문 접수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중앙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

- (69세 초과)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의욕 및 역량이 높을 경우에는 참여여부 판단
-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확인, 별도 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 확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 따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지원내용**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단계유형에 따라 참여수당 지급

단계별 지원

단계	프로그램	내용	지원
1단계 (1개월 이내)	상담 및 취업활동 계획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수립 (2회 이상 상담 실시)	개인별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참여수당 150,000원 지급
2단계 (12개월 이내)	취업역량 강화	지피지기(취업코칭) 프로그램 양성 및 특화훈련 참여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센터 등)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지원고용 등) <b>내일배움카드 훈련 연계</b>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 제한(공단 훈련 참여 가능) <b>[저소득층]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계획 수립</b>	지피지기 프로그램 수료시 - 50,000원~100,000원 지급 훈련참여수당 - 월 18,000원(월 최대 284,000원) <b>구직촉진수당[저소득층]</b> - 월 500,000원 - 최대 3,000,000원 <b>조기 취업시(3회차~5회차)</b> - 조기취업수당 지급
3단계 (6개월 이내)	고용 안정 및 유지	[취업자] 직장적응 및 장기근속 격려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취업독려	취업성공수당 - 3개월 근속 : 300,000원 - 6개월 근속 : 400,000원 - 12개월 근속 : 800,000원 최대 1,500,000원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주 30시간(중증 15시간)이상 근로 시 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 후 참여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 05. 일자리 및 창업지원 중앙

### 중증장애인지원 고용(훈련수당)



중앙

###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고요건

(훈련생)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사람

(사업체)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업체

#### 선정기준

지원고용대상

(훈련생)

-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상의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

(사업체)

-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지원고용대상 제외자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지원내용

훈련생

훈련준비금 40,000원(6일 이상 출석 시 1회 지급)

훈련일비 1일 18,000원

현장훈련[출석]일수+사전훈련[출석]일수×18,000원

숙박비 1박 10,000원(숙박시설 이용 시 지급)

훈련기간 3~7주(필요 시 최대 6개월)

훈련시간 1일 4~8시간

훈련장소 구인사업체 현장

주요 훈련내용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 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직무지도원을 배치(직무 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사업주

사업주 훈련보조금(1인, 1일) 19,340원

사업체 소속 아닌 직무지도원 수당(1일)

해당 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일 25,000원

수당 지급 기준

-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

- 결석할 때는 당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

수료요건

- 훈련기간 4/5 이상 출석 또는 훈련 중 취업 확정

#### 신청방법

각 지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 신청

####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원대상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으로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정규훈련」이란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맞춤훈련 과정」이란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 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지원제외 대상) 실업급여 수급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지원내용

훈련수당

(훈련참여수당) 월 200,000원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 월 284,000원)

- 제외 경우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을 받는 자

(교통비) 월 50,000원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식비) 월 66,000원 (\*통학생 중 식이조절 필요 또는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신청방법

1.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 및 지역본부, 지사

2. 거주지 인근 위치 공단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www.lead.or.kr](http://www.lead.or.kr))

####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 05. 일자리 및 창업지원 중앙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지원내용** 월 70,000원 범위 내 출퇴근비용 지원(실비 지원)

-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증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hub.kead.or.kr](http://hub.kead.or.kr))  
 - 회원가입 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신청대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 중앙 보조공학기기지원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법 시행일 2022.1.21. 이후)

**선정기준** 신청 대상자별 보조공학기기 신청서 작성  

-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신청 후 상담·평가 실시,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장애인 1인당 15,000,000원(중증 20,000,000원) 한도 지원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 종복 품목 지원 불가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지원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지원(47개 품목, 359여 개 제품)  

- (지원 한도액) 장애인 1인당 15,000,000원(중증 20,000,000원)<무상지원, 고용유지조건 통합>
- 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예외조건) 보조공학기기 상담 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품목)
 

- 정보접근제품 :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화면확대기, 특수키보드 및 특수시계 등
- 작업기구제품 : 높낮이조절작업테이블, 작업용의자, 이동신호기기 등
- 의사소통제품 : 영상전화기, 청력보조기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사무보조제품 : 신체보조기기, 물건집게, 독서보조도구 등

**유의사항**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판매업자가 대납하는 경우  
 1) 판매업체 : 즉시 납품계약 취소조치  
 2) 지원대상자 : 지원결정 취소  
 3) 판매업체, 지원대상자 : 부정이익 가액의 2배~5배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공공재정환수법)  
 지원금을 결정받고 고용의무기간(2년) 내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는 보조공학기기의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소개 페이지 내 “지원내용” 중 “보조공학기기 비용 지원에 관하여 유의사항” 안내 내용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 05. 일자리 및 창업지원 중앙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중앙

##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지원인 전환지원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지원 한도 :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 서비스 조건 및 기간

(본인부담금) 이용 근로자는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 수	시간당 본인부담금	비고
1명	1명	300원/1인당	
	2명	180원/1인당	
	3명	130원/1인당	동시
	4명	100원/1인당	지원
	5명	80원/1인당	

####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전화 : 063-240-2407 팩스 : 050-3470-0301

####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처리절차

서비스 신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방문 평가 후 결정(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비스대상자 통보(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지원인 파견(수행기관)→근로지원인 급여 및 사업운영비 요청(수행기관)

### 신청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

### 지원내용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 (월 30만원 한도)

취업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 (1개월) 20만원 → (2개월) 30만원 →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 (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 (☎1588-1519)에 신청



# 05. 일자리 및 창업지원 중앙

## 장애인 사이버 훈련 운영



###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신청가능 과정(2개 대부문, 6개 영역)

- 과정신청(기능과정, 시험대비 과정, 직무관리(직업생활)과정)

#### 기능과정

구분	주요과정	참여대상
전공기술	기계, 디자인기초, 웹디자인, 건축 등	
컴퓨터활용	PPT, Excel, 앱인벤터, Python 등	15세 이상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융복합기술	빅데이터, 소형무인기, 3D프린터 등	
자격증	GTQ,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등	

#### 시험대비과정

구분	주요과정	참여대상
공무원 ※교재 미지급	EBS공무원 대비 기본과정	15세 이상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검정고시 ※교재미지급	EBS 종출, 고졸 검정고시 과정	

#### 직무관리(직업생활)과정

구분	주요과정	참여대상
취업전략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취업전략 등	
인권과정	인권의 이해, 장애인차별금지, 성희롱 예방 등	15세 이상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산업안전	산업일반 기초,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등	
자식재산권	지식재산개론, 저작권, 특허과정 등	

- 정부 공공부문(공무원 준비과정, 공기업준비과정, 교원임용 준비과정)

#### 공무원 준비과정

지원대상 및 과정			
신청자격	선발인원	지원과정	지원내용
공무원 응시자격을 갖춘 등록장애인	선발고사 기준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정원 및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선발	7·9급 공무원 준비과정	직급별 시험응시에 필요한 기본과목의 동영상강의를 무료수강 지원 ※교재 미지급

<신청자격 제외대상>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신청 및 지원기간

신청기간	선별평가	서비스 개시	서비스 제공기간
연중 수시 (매월 15일 접수 마감)	매월 20일 전후 선발고사 실시	선발고사 실시 다음 달 초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1년 연장 지원 가능

#### 공기업준비과정

지원대상 및 과정			
신청자격	선발인원	지원과정	지원내용
공기업 응시자격을 갖춘 등록장애인	신청자 전원	공사, 공단 및 공공단체	공공기관(공사, 공단 등) 시험준비에 필요한 동영상 강의 무료수강 지원 ※교재 미지급

<신청자격 제외대상> 공공기관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신청 및 지원기간

신청기간	선별평가	서비스 개시	서비스 제공기간
연중 수시	없음	신청서 접수 2~3일 후 (관리자 확인)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1년 연장지원 가능

#### 교원임용 준비과정

지원대상 및 과정			
신청자격	선발인원	지원과정	지원내용
교원자격증 소지자 (익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종교원 임용 응시자격을 갖춘 등록장애인	140명 내외	유치원, 초등, 중등 교원	교원임용시험준비에 필요한 동영상강의 무료 수강 지원 ※교재 미지급

<신청자격 제외대상>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신청 및 지원기간

신청기간	선별평가	서비스 개시	서비스 제공기간
매년 2월 ~3월	없음	신청서 접수 2~3일 후 (관리자 확인)	1년

\* 신청서 송부 필요

### 신청방법

#### 과정신청

회원가입(디지털능력개발원)→과정선택→수강신청→학습 및 학습증료

#### 정부 공공부문

신청서 송부(cyber@kead.or.kr)→자격심사→지원대상자 선정→수강 승인

## 지자체 전북지역 지원시책

<b>지 역</b>	익산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발달장애인 기간제 일자리 사업		
<b>지원주기</b>	월	<b>신청방법</b>	방문
<b>제공유형</b>	현금(급여)	<b>신청시기</b>	연말 연초
<b>선정기준</b>	만 18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 중 장애인고용공단 맞춤형 훈련 이수자		
<b>지원내용</b>	익산시 남부권 노인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의 일자리 제공		

<b>지 역</b>	익산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사업 지원		
<b>지원주기</b>	월	<b>신청방법</b>	우편, 팩스, 방문 등
<b>제공유형</b>	현금	<b>신청시기</b>	연말 연초
<b>선정기준</b>	관내 주소를 둔 월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b>지원내용</b>	지원금액 : 1일 근로지원인 서비스 4시간 이하 이용 / 월 25,000원 1일 근로지원인 서비스 5시간 이상 이용 / 월 50,000원 지급방법 : 매월 25일 근로자 개인별 계좌입금		



# 06 세제 및 공공요금 감면



## 중앙

-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1.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2. 산출보험료 경감
  3.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장애인 보험료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소득세 공제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 상속 공제
-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업무(공공요금 감면 등)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철도 요금 감면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항공요금 할인(민간)

## 지자체(전북)

- 정읍 | 심한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남원 | 심한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무주 | 심한장애인 장애인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 군산 | 군산시 수도요금 감면
- 완주 | 중증장애인 유선방송 이용료 지원

## 06. 세제 및 공공요금 감면 중앙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중앙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01.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선정기준**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02. 산출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 있는 세대로 소득 3,600,000원 이하인 동시에 재산이 135,000,000원 이하  
장애인 등록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동일한 경감기준 적용

**지원내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 30% 경감  
장애인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 20% 경감  
6·7등급 상이자 : 10% 경감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03.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지원내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는 경우 : 30% 경감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  
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선정기준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

신청방법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문의전화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 126

중앙

## 장애인 보험료 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지원내용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0,000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신청방법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문의전화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 126

## 06. 세제 및 공공요금 감면 중앙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중앙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신청방법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문의전화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장애인의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00,000,000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 미포함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외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중앙

### 소득세 공제



## 중앙

### 상속세 상속 공제



#### 지원대상

소득이 있는 등록장애인

- 동일 거주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등록장애인
- 거주자의 동거입양자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0,000원 추가 공제 「소득세법」 제51조

#### 신청방법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문의전화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지원내용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0,000,000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10,000,000원×기대여명의 연수)

####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에 신청

## 06. 세제 및 공공요금 감면 중앙

###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업무(공공요금 감면 등)

중앙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장애인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6~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 신청방법

한국전력 관할 지사 지점 방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전화(☎123), 온라인([www.kepco.co.kr](http://www.kepco.co.kr))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신청

수도·전기요금 감면 신청

전화요금 감면 신청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시·청각장애인가정 TV수신료 면제 신청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우

- 장애수당

- 자녀교육비

-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장애인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방법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전화 : 산업통상산업부(☎1577-9000)

중앙

##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중앙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 외국인 포함)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지원내용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0,000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0,000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 요금부과)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지원대상**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장애인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http://www.oklife.go.kr)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방법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06. 세제 및 공공요금 감면 중앙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기타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최대 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신청방법

(전화신청)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1523)

(방문 신청) 통신사대리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요금감면서비스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시)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통신사업자)
- 대상자 확정(통신사업자)
- 서비스 지원(통신사업자)
- 서비스 사후 관리(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시)

## 중앙 철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신청방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단,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국민주민등록증(혹은 국내거소신고증) 추가 제시

## 중앙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 외국인 포함)

- GXT 전철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태그만 가능

#### 지원내용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GXT 전철은 50%  
- 민영도시철도의 경우 운영회사에 따라 할인율 상이할 수 있어 확인 필요

#### 신청방법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중앙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문의전화 :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 06. 세제 및 공공요금 감면 (중앙)

### 항공요금 할인(민관)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항공요금 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실시하는 제도임

#### 지원내용

#### 대한항공(문의처 : 1588-2001)

조건	할인율	증빙서류
· 1~4급 장애인		
·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50%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 및 동반 보호자 1명		
· 5~6급 장애인	30%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아시아나 항공(문의처 : 1588-8000)

조건	정상운임 할인율	증빙서류	비고
장애인 (성인/소아/유아)	중증(혹은 1~3급) 복지카드 소지자	50%	
	경증(혹은 4~6급) 복지카드 소지자	30%	시·군· 구청장 발행 이용료 복지카드
장애인동반자	중증(혹은 1~3급) 승객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50%	50% 할인

#### 에어부산(문의처 : 1666-3060)

구분	할인율 (공시운임 대비)	적용대상	증빙서류
장애인	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기준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1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준 4~6급)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소아장애인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기준 1~3급)	
	3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준 4~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명 (단, 운임 미부과 손님의 동반 보호자는 할인 불가)	

#### 진에어(문의처 : 1600-6200)

적용대상	운임 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증빙서류
·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 보호자 1인	40%	50%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기존의 장애등급 장애정도 표기 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 1~4급 장애인 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본인			모두 증빙 서류로 인정
· 5~6급 장애인 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본인	할인 없음	50%	

#### 제주항공(문의처 : 1599-1500)

적용조건	운임 할인율	증빙서류
· 1~4급 장애인 ·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1인	40%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장애인등급 표기된 장애 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모두 가능

#### 티웨이항공(문의처 : 1688-8686)

구분	운임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적용대상	증빙서류	
	주말/ 성수기	비수기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제주도민 (경증, 기준 4~6급)	5%	20%	50%	신분증상 현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본 4~6급)
소아장애인		50%	50%	50%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기준 1~3급)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준 1~3급)의 동반 보호자 1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중증, 1~3급)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적용대상 중 장애등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9.7월 이전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발급자에 한함

## 지자체 전북지역 지원시책

<b>지 역</b>	정읍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심한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b>지원주기</b>	월	<b>신청방법</b>	방문
<b>제공유형</b>	감면	<b>신청시기</b>	수시
<b>선정기준</b>	정도가 심한 장애인		
<b>지원내용</b>	월 상·하수도 사용량의 5m <sup>3</sup> 이내(1가구당 월 9,300원)		

<b>지 역</b>	남원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심한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b>지원주기</b>	월	<b>신청방법</b>	방문
<b>제공유형</b>	감면	<b>신청시기</b>	연중
<b>선정기준</b>	정도가 심한 장애인		
<b>지원내용</b>	상하수도 요금 감면		

<b>지 역</b>	무주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심한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b>지원주기</b>	월	<b>신청방법</b>	우편, 팩스, 방문 등
<b>제공유형</b>	감면	<b>신청시기</b>	수시
<b>선정기준</b>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b>지원내용</b>	상수도 사용량 5톤 감면		

<b>지 역</b>	군산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군산시 수도요금 감면		
<b>지원주기</b>	월	<b>신청방법</b>	팩스, 방문 등
<b>제공유형</b>	감면	<b>신청시기</b>	연중
<b>선정기준</b>	정도가 심한 장애인		
<b>지원내용</b>	상수도 사용량 3톤에 해당하는 요금		

<b>지 역</b>	완주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중증장애인 유선방송 이용료 지원		
<b>지원주기</b>	월	<b>신청방법</b>	협약사에 신청
<b>제공유형</b>	감면	<b>신청시기</b>	수시
<b>선정기준</b>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b>지원내용</b>	'SK브로드밴드(협약사)' 이용요금의 50% 감면		

# 07

## 이동 및 편의지원, 차량 관련 등



### 중앙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 사업 안내  
장애인 운전교육사업 안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승용차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행)

### 지자체(전북)

무주 |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부안 | 한국수어통역센터 차량 운영  
임실 |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  
정읍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편의 경사로 설치 지원  
정읍 | 중증신장장애인 혈액 투석 교통비 지원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 사업 안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1~4급),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취득 조건**

**시력**

- 1종 면허 : 좌·우 시력 각각 0.5 이상, 양안 0.8 이상
- 2종 면허 : 양안 시력 0.5 이상, 단안시력 0.6 이상
- 단 안 : 좋은 눈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 없을 것

**청력**

- 1종 대형, 특수면허는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신체장애**

- 운동능력측정에 합격한 자

**발달, 정신장애**

-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합격한 자

**그 외 장애**

- 별도의 취득 조건은 없으며, 상담 후 진행

**지원내용**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지원

## 1-1. 장내기능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4일 이내
- 교육내용 :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학과시험 합격 조건

## 1-2. 도로주행교육

- 교육시간 : 10시간 5일 이내
- 교육내용 : 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연습면허증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은 '도로연수교육'을 지원

**도로연수교육**

- 교육시간 : 10시간 5일 이내
- 교육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조건 부과된 운전면허증(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 없는 운전면허증으로 신청 가능)

장애인운전 및 보조기기평가(체험) 교육을 지원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 가능 여부 확인, 운전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 정보 제공, 차량 보조기기 사용 방법, 차량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 정보 제공
- 교육방법 :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으로 내원하여 교육 받음
- 교육신청조건 : 자체, 뇌병변, 청각 장애 등록 및 등록 예정 장애인

## 신청방법

13개 운전면허 시험장 내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및 도로교통공단 문의

(지원센터 방문 후 접수 예약 후 교육, ☎ 1577-1120, [www.koroad.or.kr](http://www.koroad.or.kr))

※전북특별자치도 :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 063-210-3855)

## 신청절차

기관별 유선문의 → 본인방문 → 상담 및 접수

**준비물**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및 장애증명서

**온라인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https://ko.surveymonkey.com/r/CQHRO9B>

**메일이나 팩스, 방문, 우편 제출**

**교육 신청서**

- 서식 다운 받아서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 서식 경로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장애인운전교육-교육신청안내\*
  - [http://www.nrc.go.kr/education/html/content.do?depth=ei&menu\\_cd=01\\_06\\_02](http://www.nrc.go.kr/education/html/content.do?depth=ei&menu_cd=01_06_02)

**교육 과정별 응시표 및 운전면허증 제출**

- 장내기능시험교육 : 학과시험 합격한 자동차운전면허 응시표
- 도로주행시험교육 : 연습면허증
- 도로연수교육 : 조건이 부과된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일 경우)**

**제출 방법 : 메일이나 팩스 하나로 제출**

- ① 내방 :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운전교육계
- ② 메일 : [nrc1550@korea.kr](mailto:nrc1550@korea.kr)
- ③ 팩스 : 02-901-1550

**교육 문의 : 운영시간 평일 08:30~17:30**

- 전화 : 02-901-1553
- 카카오톡 상담\*



## 07. 이동 및 편의지원, 차량 관련 등 중앙 장애인 운전교육사업 안내

중앙

## 승용차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b>지원대상</b>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인 자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중 아래의 면허조건을 만족하는 분을 지원  면허조건(운전 시 운전보조기기가 필요한 조건)이 E, F, G, H, I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없이 가능  - E :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 우측방향지시기, I : 왼쪽엑셀러레이터	<b>지원대상</b>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b>지원내용</b>	자동차운전면허취득교육(학과, 기능, 도로주행) : 무상교육 지원	<b>지원내용</b>	개별소비세 5,000,000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b>신청방법</b>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 지원과 내방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 제출(☎ 02-901-1553)	<b>신청방법</b>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 소관 관할세무서

## 중앙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b>지원대상</b>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1대만 가능
<b>지원내용</b>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b>신청방법</b>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중앙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b>지원대상</b>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b>지원내용</b>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 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b>신청방법</b>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07. 이동 및 편의지원, 차량 관련 등

중앙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자동차 한 대만 발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장애등록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자동차 한 대만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지원내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장애인과 외국인 포함)

-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원내용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신청방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참고> 예시

전주시 시설공단



중앙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장애인과 외국인 포함)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

**하이패스 차로 :** 지문인증방식 :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 신청방법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지사), 거점 영업소(20)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 07. 이동 및 편의지원, 차량 관련 등 중앙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지자체 전북지역 지원시책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본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보호자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장애인 등록 외국인 포함)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 역	무주	운영기관	연중
사업명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신청시기	수시
선정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장 장애인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필요)		
지원내용	교통비 월 100,000원(통장 지급)		

**지원내용**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 30%

- 중증장애인 : 50%

- 경증장애인 : 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제시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는 적용 제외

지 역	부안	운영기관	연중
사업명	한국수어통역센터 차량 운영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공모
제공유형	기타	신청시기	수시
선정기준	수어통역센터		
지원내용	차량 운영비 지원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온라인 예약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http://www.cyberts.kr)

지 역	임실	운영기관	연중
사업명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기타	신청시기	수시
선정기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복지교통카드 발급(1회당 1,000원, 12회/월)		

중앙

###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원대상**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장애인 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

**신청방법**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

※전북 :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063-227-0002)

지 역	정읍	운영기관	연중
사업명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 경사로 설치 지원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기타	신청시기	수시
선정기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300m 미만		
지원내용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 진입로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경사로 설치 후 1년이상 유지조건		

지 역	정읍	운영기관	연중
사업명	중증신장장애인 혈액 투석 교통비 지원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신청시기	수시
선정기준	관내 거주 중증 신장 장애인		
지원내용	관내 거주 중증 신장장애인(주 2회 이상 혈액투석)에게 월 50,000원의 교통비(생활지원수당) 지급		

# 08

## 자립생활



중앙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 08. 자립생활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중앙



##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중앙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성인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활동), 발달재활 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

- 시범사업 참여지자체 17개 지역(2025년 기준) 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 (주간, 청소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의 4개 바우처 수급권자 중 당사자 의사결정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으로 연구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장애유형, 연령, 수급이력 등 고려)

※2025년 현재 전북 도내의 시범지역 : 익산시

###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의 20% 이내 개인예산제 서비스 사용  
장애인 4개 바우처 총급여의 20% 이내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 신청방법

시범사업 참여 지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전화 : 129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입소 장애인, 재가장애인

### 선정기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서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대상자 선정  
※2025년 현재 전북 도내의 시범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부록의 주소록 참고

### 지원내용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개별특성 고려한 주거, 일자리, 건강관리, 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연계·지원

### 신청방법

자립조사(1차 기초조사, 2차 심층조사)를 통해 발굴된 자립 희망 장애인은 자립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수행 기관(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  
문의전화 : 02-3433-4533



# 09

## 문화·체육



### 중앙

장애인문화 예술지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지자체(전북)

군산 | 군산 캠핑장 사용료 감면(30%)  
부안 |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 장애인문화 예술지원



지자체 전북지역 지원시책

### 지원대상

함께누리 지원(공모,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공모 프로그램 유형별로 적합성을 검토 후 선정  
 - 주관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공모(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1월~2월  
 - 사업기간 : 3월~12월

### 선정기준

공모 프로그램 유형별 적합성을 검토하여 선정  
 - 상세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www.i-eum.or.kr](http://www.i-eum.or.kr)) 공고 내용 참고

### 지원내용

장애인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 환경 조성을 지원  
 - 장애예술 창작역량강화 지원  
 -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 장애인 문화향유활동(축제, 경연, 교류) 지원  
 - 지역대상 문화활성화 지원  
 - 문화소외계층 지역대상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 신청방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 ([www.i-eum.or.kr](http://www.i-eum.or.kr)) 공고 참고  
 문의전화 : 02-760-9700

### 중앙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장애인 등록 외국인 포함)  
 -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지원내용

입장요금 무료 및 할인  
 -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 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신청방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지 역	군산	운영기관	연중
사업명	군산 캠핑장 사용료 감면(30%)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감면	신청시기	수시
선정기준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 : 시설사용료의 30% 감면 문의처 : 063-454-3307		

지 역	부안	운영기관	연중
사업명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감면	신청시기	수시
선정기준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 : 시설사용료의 30% 감면		



# 10 일상생활 지원



## 중앙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의료급여)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시·청각 장애인용 TV보급사업  
장애인방송시청 지원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장애인재활지원사업)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지원 (장애인재활지원사업)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장애인재활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최종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 지자체(전북)

군산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김제 | 유료방송(이어드림) 이용요금 지원사업  
남원 | 시각장애인 이어드림 서비스  
남원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부안 |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순창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익산 |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장수 |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  
전주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전주 |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  
정읍 | 시각장애인 이어드림서비스  
정읍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정읍 |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진안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 10. 일상생활 지원 중앙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지원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

(장애유형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 해당되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자

### 지원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품목 지원

#### • 품목 및 교부대상

보조기기 품목	지원 가능 장애유형
욕창예방 방석 및 매트리스	심장장애인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시스템(독서확대기),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시각장애인
신호장치, 진동시계, 소리증폭기, 다기능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청각장애인
룰레이터(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음식 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점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목욕의자, 경사로(후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비단 특수양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수동조작용 팔 지지대(책상 고정형), 전동칫솔	지체·뇌병변장애인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개인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독서용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심장·호흡기장애인
기억 지원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장애인 지적·자폐성장애인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신청서 제출 내용을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종합조사(최소 적격성 검사)를 진행하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최소기준 해당여부 확인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 평가진행 후, 시군구에서  
보조기를 제공

## 중앙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세부 대상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별표2] 참조  
- 건강보험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장애인 포함)  
- 의료급여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내용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지정 고시 금액) 외의 금액,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  
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중앙

##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과 전화통화를 원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 지원내용

「107손말이음센터」의 중계사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수어통역, 문자중계) 제공

### 신청방법

손말이음센터

- 국번없이 '107+영상전화'

- PC, 스마트 폰 주소창에 '107.kr'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가능

**10. 일상생활 지원** 중앙  
**시·청각 장애인용 TV보급사업**



중앙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장애인재활지원사업)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이 등급자  
50,000원 유상 보급하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무료 보급  
소득 구분,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보급  
- 2019년~2024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지원내용** 시·청각 장애인용 TV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시각·청각장애인용 TV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http://tv.kcmf.or.kr))  
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후 온라인 신청 가능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지원대상** 후천적 요인으로 중도에서 시력을 잃은 중도 시각장애인  
**지원내용** 중도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중앙  
**장애인방송신청 지원**

**지원대상**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지원내용**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어, 화면 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장애인 학생을 위해 EBS교육 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 (<http://free.ebs.co.kr>)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  
하여 보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시각·청각장애인용 TV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http://tv.kcmf.or.kr))  
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후 온라인 신청 가능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중앙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지원**  
(장애인재활지원사업)



**지원대상** 시각장애인  
**지원내용** 시각장애인 음악재활 프로그램 지원  
- 점자악보 제작, 음악재활 홈페이지 게시  
- 시각장애인이 음악을 통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음악재활아카데미 운영  
- 시각장애인이 음악적 기량을 발휘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예술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신청방법**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02-880-0801)

중앙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장애인재활지원사업)



**지원대상** 척수장애인  
**지원내용** 척수장애인에게 재활프로그램 실시  
-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상담가 파견사업,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등 상담사업 전개  
-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사업 전개  
-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강화 등 재활지원사업 전개  
- 생활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 지원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전개 등  
**신청방법**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신청

## 10. 일상생활 지원 중앙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중앙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병원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에 처한 경우 일시적(7일 이내)  
으로 24시간 돌봄 지원

이용 사유 및 이용사유별 이용기간

치료, 입원 :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최대 7일 이내)

경조사

- 결혼(본인 5일, 자녀 1일)
- 출산(배우자, 7일)
- 입양(본인, 7일)
- 사망(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5일)
- 사망(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신체적 및 심리적 소진 : 본인, 7일 이내

이용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

- 갑작스러운 입원, 가족의 사망 등 증빙서류 발급이 신청 시 어려운 경우는 퇴소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지원내용**

일상생활 지원, 낮 활동 프로그램 지원, 야간 돌봄지원, 식사 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치료·입원·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시 일시적 돌봄서비스제공

- 1회 최대 7일(사유별 이용일수 차이), 1년 최대 30일
- 이용료 15,000원, 식비 15,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는 이용료 없으며 식비만 지불

**신청방법**

평일 주간(9:00~18:00)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평일 야간(18:00~9:00) 주말, 공휴일, 당일 입소의 경우 :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청 자격**

18세 이상~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기준**

공통 :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에 의함

- (주간 그룹형 1:1 지원) 70점 이상 80점 미만  
※2024.9.1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선정기준 한시적용 : 70점 이상 80점 미만→50점 이상 80점 미만
- (주간 개별형 1:1 지원) 80점 이상
- (24시간 개별 1:1 지원) 80점 이상이면서 가정 내 보호체계 점수가 '5점 이상'인 자로,  
통합돌봄 심의위원회에서 가족과 분리된 별도의 주거지원·야간돌봄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정된 자

**지원내용**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 1:1 지원

**프로그램**

- 일상생활훈련, 취미활동, 자립생활, 행동지원, 가족지원(제공기관별 적정 프로그램 구성)

**신청방법**

**서비스 지원절차**

1. 신청
2. 결정통지서 수령
3. 선정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교육
4. 초기상담 및 이용계약
5.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비용청구
6. (그룹형)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서 및 (도전)행동지원 계획서 작성
7. (그룹형)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평가

## 10. 일상생활 지원 중앙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중앙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가족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 포함

#### 선정기준

지원대상 제외 기준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 첨부 필요

#### 지원내용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 지원

지원 인원 : 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소요경비 : 1인당 최대 240,000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사업 수행기관

#### 지원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0,000원  
- 예외적으로 500,000원 초과한 금액이 소요 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0,000원, 최대 월 500,000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지원대상의 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후견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신청기간) 연중

중앙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지원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 신청방법

시·군·구청 문의

## 10. 일상생활 지원 중앙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중앙

###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 지원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선정기준

노인 가구 선정기준(생략)

#####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

#### 지원내용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장애정도 구분 없음)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00,000,000원 초과시 소송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지원내용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 제공

-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 가정 내에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비주기적 안전확인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 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진행
- 안전확인시 부재증 등으로 미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 신청방법

(유선 또는 방문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 유선(☎132)

(온라인 상담) [www.klac.or.kr](http://www.klac.or.kr)

#### 신청방법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

**지자체 전북지역 지원시책**

<b>지 역</b>	군산	<b>운영기관</b>	연종
<b>사업명</b>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b>지원주기</b>	수시	<b>신청방법</b>	방문
<b>제공유형</b>	기타	<b>신청시기</b>	연중
<b>선정기준</b>	전동,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년 200,000원 이내</li> <li>· 그외 등록장애인 년 100,000원 이내</li> </ul>		

<b>지 역</b>	김제	<b>운영기관</b>	연종
<b>사업명</b>	유료방송(이어드림) 이용요금 지원사업		
<b>지원주기</b>	월	<b>신청방법</b>	방문
<b>제공유형</b>	감면	<b>신청시기</b>	수시
<b>선정기준</b>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b>지원내용</b>	유선방송료 이용료 지원(시 10,000원+ 방송사 5,000원)		

<b>지 역</b>	남원	<b>운영기관</b>	연종
<b>사업명</b>	시각장애인 이어드림서비스		
<b>지원주기</b>	월	<b>신청방법</b>	방문
<b>제공유형</b>	현물지급	<b>신청시기</b>	연중
<b>선정기준</b>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b>지원내용</b>	TV 음성안내기능 탑재 셋톱박스 지원		

<b>지 역</b>	남원	<b>운영기관</b>	년
<b>사업명</b>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b>지원주기</b>	년	<b>신청방법</b>	방문
<b>제공유형</b>	기타	<b>신청시기</b>	수시
<b>선정기준</b>	전동,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당 200,000원이내</li> <li>- 수급자장애인 : 본인부담금 10%</li> <li>- 차상위장애인 : 본인부담금 20%</li> <li>- 일반장애인 : 본인부담금 50%</li> </ul>		

**지자체 전북지역 지원시책**

<b>지 역</b>	부안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b>지원주기</b>	수시	<b>신청방법</b>	방문, 전화
<b>제공유형</b>	현금지급, 기타	<b>신청시기</b>	
<b>선정기준</b>	등록장애인(수급자, 차상위)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비 및 수리비 지원</li> <li>·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년 300,000원 이내</li> <li>· 그외 등록장애인 : 년 150,000원 이내</li> </ul>		

<b>지 역</b>	순창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b>지원주기</b>	수시	<b>신청방법</b>	방문
<b>제공유형</b>	감면	<b>신청시기</b>	수시
<b>선정기준</b>	관내 등록 장애인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200,000원 이내</li> <li>· 일반장애인 : 100,000원 이내</li> <li>· 관련조례에 전동보조기기지원을 받은 자 : 100,000원 이내</li> </ul>		

<b>지 역</b>	익산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b>지원주기</b>	수시	<b>신청방법</b>	방문
<b>제공유형</b>	감면	<b>신청시기</b>	연초
<b>선정기준</b>	관내 등록 장애인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 및 일반휠체어 부품 등) 수리 지원</li> <li>· 1인당 200,000원 이내</li> <li>(1순위) 수급자 : 본인부담금 10%</li> <li>(2순위) 차상위 : 본인부담금 20%</li> <li>(3순위) 일반장애인 : 본인부담금 50%</li> </ul>		

**지자체 전북지역 지원시책**

지 역	장수	운영기간	연중
<b>사업명</b>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		
<b>지원주기</b>	반기	신청방법	방문
<b>제공유형</b>	바우처	신청시기	연중
<b>선정기준</b>	관내 주소를 둔 장애인		
<b>지원내용</b>	연 72,000원(12회/연, 6,000원/회)		

지 역	전주	운영기간	연중
<b>사업명</b>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b>지원주기</b>	년	신청방법	방문
<b>제공유형</b>	현물지급	신청시기	연중
<b>선정기준</b>	전주시 거주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b>지원내용</b>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200,000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연간 100,000원 이내		

지 역	전주	운영기간	연중
<b>사업명</b>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		
<b>지원주기</b>	주	신청방법	전화
<b>제공유형</b>	현물	신청시기	수시
<b>선정기준</b>	관내 거동불편 장애인		
<b>지원내용</b>	제공기관(2개소)에서 대상자 선정 또는 변경 후 지자체 승인을 거쳐 자원봉사자 통해 도시락 1일 1식 배달 (주 5회)		

지 역	정읍	운영기간	연중
<b>사업명</b>	시각장애인 이어드림서비스		
<b>지원주기</b>	수시	신청방법	방문
<b>제공유형</b>	기타	신청시기	수시
<b>선정기준</b>	등록 시각장애인 중 차상위 및 수급자		
<b>지원내용</b>	헬로 TV스마트 셋탑 보급(가구당 1대 지원)		

**지자체 전북지역 지원시책**

지 역	정읍	운영기간	연중
<b>사업명</b>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b>지원주기</b>	수시	신청방법	방문
<b>제공유형</b>	기타	신청시기	수시
<b>선정기준</b>	전동,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b>지원내용</b>	1인당 300,000원 이내 - 수급자장애인 : 본인부담금 10% - 일반장애인 : 본인부담금 50%		

지 역	정읍	운영기간	연중
<b>사업명</b>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b>지원주기</b>	년	신청방법	전화
<b>제공유형</b>	기타	신청시기	수시
<b>선정기준</b>	정읍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이용자		
<b>지원내용</b>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 - 최대 30,000,000원		

지 역	진안	운영기간	연중
<b>사업명</b>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b>지원주기</b>	수시	신청방법	방문
<b>제공유형</b>	기타	신청시기	수시
<b>선정기준</b>	관내 등록장애인		
<b>지원내용</b>	- 수급자 장애인 : 200,000원 이내 - 일반장애인 : 100,000원 이내		

# 11 바우처



## 증정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에너지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할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산림복지 이용권  
평생교육 바우처지원  
문화바우처사업 (통합문화이용권)

## 지자체(전북)

정읍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시 추가 지원)  
순창 :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지원  
임실 : 취약계층 명절위로금(상품권)지원

## 11. 바우처 중앙 장애인활동지원



## 중앙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원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 6세 이상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관할 주민센터 문의)
  -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 신청가능(2023~)
  - 장애등록 외국인 중 예외적으로 난민인정자 신청 가능
  - 별도의 취득 조건은 없으며, 상담 후 진행

**지원내용**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 매월 일정액 바우처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1~15구간) : 월 1,000,000원~7,980,000원

특별지원급여(한시적 지원)

- 출산 : 월 1,332,000원
- 자립준비 : 월 335,000원
- 보호자 일시부재 : 월 335,000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2021년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신규)

(특별지원급여 신청시기)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읍·면·동/국민연금공단)

3. 대상자 확정(시·군·구)

4. 이의 신청 접수(읍·면·동)

5. 서비스 지원(활동지원기관)

6. 서비스 사후관리(시·군·구/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민연금공단)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지원대상 제외 기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선정기준**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소견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 진단서, 소견서 첨부  
- 단 행복e음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제외

## 11. 바우처 중앙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지원대상

18세 미만 장애아동

(소득기준) 기준증위소득 180% 이하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등록이 안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

- 단, 9세 미만인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가사·간병 방문 지원

### 지원내용

소요 비용 차등 지원

소득기준	급여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월 250,000원	면제
차상위계층	월 230,000원	20,000원
기준증위소득 65% 이하	월 210,000원	40,000원
기준증위소득 120% 이하	월 190,000원	60,000원
기준증위소득 180% 이하	월 170,000원	80,000원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읍·면·동)
- 대상자 확정(시·군·구)
- 이의 신청 접수(시·군·구)
- 서비스 지원(시·도 및 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발달재활서비스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읍·면·동)
- 대상자 확정(읍·면·동)
- 서비스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사후 관리(읍·면·동)

11. 바우처 중앙

##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단,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1(중복이용 불가)

-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

**지원내용** 방과 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발달장애(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읍·면·동/국민연금공단)
- 대상자 확정(시·군·구)
- 이의 신청 접수(읍·면·동)
- 서비스 지원(활동지원기관)
- 서비스 사후관리(시·군·구/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민연금공단)

중앙

## 언어발달 지원사업



**지원대상**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소득별 차등지원)

**지원내용**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 제공  
(지원불가)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학습지 사용한 지도 불가

바우처 지원액(소득별 차등 지원)

소득기준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월 220,000원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0,000원	20,000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0,000원	40,000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0,000원	60,000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발달재활서비스

# 11. 바우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제외대상

- (유사서비스 지원 제외)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기준

##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상담 제공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기본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음

-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한정

-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

-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

-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
-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

## 신청방법

### (신청 대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개인별지원계획서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 필요성이 명시된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수립 완료된 개인별지원계획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말경에 대상자 결정 완료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증명서류 참고 사항

- 등록기준 확인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유아(9세 미만)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의뢰서

##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3. 대상자 확정(시·군·구)
4. 서비스 지원(시·군·구)
5. 서비스 사후 관리(주민등록상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11. 바우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기준**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등에 놓인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20% 이상 선정

(제외대상)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음

②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선택 이용 가능 :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

③ 취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④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sup>2)</sup>에 입소한 자

<sup>2)</sup>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 거주자 이용 가능

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단,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⑦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⑧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⑨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등 이용 가능

※③, ⑤, ⑦, ⑧, ⑨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 중 기준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전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전년도 사업 이용자가 '25년도 지침 개정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

## 지원내용

제공기관 이용 지원 : 기본형(월 132시간), 확장형(월 176시간) 월-금(9~18시)

- 확장형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조정(감액)이 있을 수 있음

서비스 단가 : 기준단가 16,620원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구성인원	1인 그룹	2인 그룹	3인 그룹
적용 요율	150%	100%	80%
시간당	24,930원	16,620원	13,300원
그룹전체	24,930원	33,240원	39,900원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 발달장애(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대상자 확정(시·군·구)
- 서비스 지원(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

## 11. 바우처 (중앙)

### 에너지바우처

(전기·도시가스 등 요금할인)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영유아) 7세 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를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에너지바우처와 유사한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여름(7~9월) 전기요금 차감

- 겨울(10월~익년 5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전자바우처 (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지원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받고자하는 경우 하절기 기간을 고려하여 세대원수별 차등지원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지원금액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 (지원방법)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www.energyv.or.kr](http://www.energyv.or.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시·군·구)

4. 이의 신청 접수(주민센터)

5. 서비스 지원(한국에너지공단)

6. 서비스 사후 관리(한국에너지공단/시·도)

11. 바우처 중앙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지원대상

만 5세~69세 장애인

- 단,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 지원하지 않음

선정기준

만 5세~69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하며, 소득무관이나 지원 우선순위는 지자체별로 상이함

지원내용

1인당 매월 110,000원 범위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http://dvoucher.kspo.or.kr))



중앙

## 산림복지 이용권



지원대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지원금액) 1인당 100,000원 연 1회 지급(바우처 카드 지급)

(신청기간) 2025년 1월 2일 ~ 2025년 1월 31일

(선정일) 2025년 2월 20일

(카드발급) 2025년 2월 20일(목) 14시 ~ 3월 24일(월)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1인당 100,000원 포인트 충전(재난지원금 방식)

- 비회원의 경우 신규카드 발급(선불카드 또는 KB페이 앱 다운)

- 카드 발급신청 기간 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용권 발급을 받지 않은 선정자는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해당 이용권을 차순위에게 발급함

· 전화, 문자 등의 수단으로 연락되지 않는(연락 두절) 사람, 카드 미발급자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 또는 카드발급부터 2025년 11월 30일(예산 소진 시까지)

- 다음 연도 이월 및 현금 교환 불가 :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

\*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이용권 사용 조기 마감될 수 있음(2025년부터 이용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1.1배수 선발)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복지전문업

- 사용처는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http://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산림복지 전문업 포함)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 2025년부터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대면 산림복지서비스 판매 서비스 이용 가능(상세 기준 추후 안내)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지원내용

온라인(모바일) 신청 방법

접수처 :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http://www.forestcard.or.kr))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제출서류

-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대리신청 : 위임장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모, 친족, 배우자, 후견인, 장애인 보호자, 청소년보호사, 상담사, 청소년기관  
지도사, 교사, 학교장 등이 대리신청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대리 신청 가능

우편 신청 방법

접수처 : (3483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제출서류

-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별지3 서식) 1부

· 서류 제출 시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휴대폰 번호를 작성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접수 불가

## 11. 바우처 중앙 평생교육 바우처지원



## 중앙 문화바우처사업 (통합문화이용권)



### 지원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역별 특성화 대상자
-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 이상)
- 노인(65세 이상) 등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 중 12,000명 지원

\*단, 신청규모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 신청 장애인 중 소득수준 고려 선정

### 선정기준

등록장애인(만 19세 이상),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인수당 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광역지자체별 특성화대상자 30세 이상 디지털교육 수요자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당 연간 350,000원 이내

(이용 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 학점취득교육(학점은행제)
- 지자체평생학습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관 정보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http://www.lllcard.kr))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http://www.lllcard.kr)), 모바일 웹

(방문 신청)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 신청서 등 양식은 각 광역지자체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공지된 공고문 확인 필요

### 지원대상

6세 이상(2019.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개인당 연간 140,000원

\*문화, 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영화관람, 도서구매, 전시 관람, 공연 관람 등)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가맹점 정보 조회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http://www.mnuri.kr))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http://www.mnuri.kr))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가능

###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2.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및 모바일 앱(본인인증 후 신청))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 대상자 확정(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서비스 지원(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 서비스 사후 관리(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웹사이트, 인터넷)

## 지자체 전북지역 지원시책

<b>지 역</b>	정읍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시 추가 지원)		
<b>지원주기</b>	월	<b>신청방법</b>	방문
<b>제공유형</b>	바우처	<b>신청시기</b>	수시
<b>선정기준</b>	국비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아동		
<b>지원내용</b>	7세 이하의 장애(예전)아동 중 현재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에게 서비스 2회(월 90,000원) 추가 제공		

<b>지 역</b>	순창	<b>운영기관</b>	연중
<b>사업명</b>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지원		
<b>지원주기</b>	월별	<b>신청방법</b>	기타
<b>제공유형</b>	현금지급	<b>신청시기</b>	수시
<b>선정기준</b>	관내 활동지원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관내 활동지원사		
<b>지원내용</b>	지급액 : 월 50,000원 지원근거 : 「순창군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2024.9.13. 제정) ※매월 처우개선비 신청서를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제출		

<b>지 역</b>	임실	<b>운영기관</b>	명절시기
<b>사업명</b>	취약계층 명절위로금(임실사랑상품권)지원		
<b>지원주기</b>	월별	<b>신청방법</b>	방문
<b>제공유형</b>	실물바우처	<b>신청시기</b>	명절 3주전
<b>선정기준</b>	차상위 수급자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다문화가정		
<b>지원내용</b>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3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400,000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5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		



## 중앙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재활병원  
장애인취업 알선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체활시설 운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 12 기관 운영 및 지원



## 부록

**전북 기관·시설·단체 연락처**  
보조기기 수리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협회(도 단위)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자립지원 지원사업 수행기관  
장애인직업체활시설  
평생교육기관·시설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 12. 기관 운영 및 지원 중앙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중앙 장애인취업 알선



**지원대상** 법적 등록장애인  
예비장애인  
-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

**지원내용** 지역 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신청방법**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 중앙 권역재활병원



**지원대상** 권역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상담(건강상태 및 욕구 파악) 후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권역재활병원 내원환자 대상 :  
공공재활프로그램<sup>1)</sup> 제공 및 가정과 사회에 성공적인 복귀 지원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속적·포괄적 공공재활의료서비스 제공  
<sup>1)</sup> 건강증진(건강관리)프로그램, 소아청소년 재활프로그램, 조기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등

**신청방법** 권역재활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 조선대학교 호남권역재활병원(☎062-613-9000)  
※권역재활병원(전국 7개소) 현황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권역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기관

(공통)  
- 장애인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서비스 제공  
-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를 통해 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직업재활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  
-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 중증장애인 편의점

(장애인고용포털 운영) 워크투게더 : 2025년 8월 말경 운영종료→“고용24”로 통합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관**

- 전국 각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다양한 장애인단체에서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일부 지자체 및 민간영역에서 “장애인일자리센터”를 운영

## 중앙 장애인복지관 운영



※호남권역재활병원  
(☎062-613-9000)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신청방법**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2. 기관 운영 및 지원 중앙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중앙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신청방법**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지원대상** 서비스 대상 : 모든 장애인 ※우선 지원 대상 :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리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방법** 해당지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중앙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중앙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상담

**지원대상**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원내용** 지적장애인 대한 상담지원 : 부모가족 상담 및 사후관리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 참여활동 지원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문화·체육 활동지원 : 문화여가활동, 생활체육활동 지원

**신청방법** 해당지역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방문

※문의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02-592-5023, [www.kaidd.or.kr](http://www.kaidd.or.kr))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 12. 기관 운영 및 지원 중앙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 장애인 거주시설 중앙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우선 배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 중복 장애 등

**지원내용**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

**신청방법** 해당지역 주간이용시설 방문

**지원대상** (우선 입소대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X1) 점수』

- 1)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204점/190점
- 2) 장애유형별거주시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120점/110점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시설 입소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필수조건)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등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가능

(실비입소이용자) 종합조사 결과를 총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적격성 심사 간소화(생략) 가능

**지원내용** 보장시설 여부에 따른 기초수급자 급여 지급

보장시설 : 시설급여(무료 이용)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 : 생계급여(실비 이용)

\*보장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제외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설 입소(이용) 신청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중앙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 외 :

부양의무자가 없는 등록장애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자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 :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지원내용**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중앙

**지원대상** 등록장애인(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단기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내용**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 제공

\*1회 이용기간 : 30일 이내, (6개월 이상 이용 시 시·군·구의 승인 필요)

(프로그램 및 사업) 개별서비스지원, 자립생활 지원,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정서안정·여가지원, 이용자 권리사업, 직업지원 사업, 가족지원 사업, 상담을 통한 욕구 파악

단기입소자 중 주간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한 경우

- 단기거주시설의 휴무일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단기(연중 1개월 이내) 입소 전 주간이용시설 이용자인 경우

- 지자체장이 중복 수급이 아닌 것으로 인정한 경우

**12. 기관 운영 및 지원** 중앙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부록**  
**전북 기관·시설  
·단체 연락처**

**지원대상**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증위소득 이하인 자

**지원내용**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시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 294,000원 입소료 지원

**신청방법** 해당시설에 지원

**중앙**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활동 지원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 이용료 부담

**신청방법** 해당시설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구분	수리업체 및 관련기관	전화번호	지원내용
전북	전북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230-8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기기 맞춤형 보급 - 사후 관리(소독, 세척 등)</li> <li>• 부품교체등 수리필요시 - 시·군별 수리센터안내</li> </ul>
전주	전주보장구수리센터 전주시장애인정보교환센터	908-9005 283-66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 장애인 : 20만원 이내</li> <li>• 일반장애인 : 10만원 이내</li> </ul>
군산	세진엠케어 나드리메디컬케어 하늘케어 군산의료보조공학센터	462-8158 451-7080 271-9966 466-22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 장애인 : 20만원 이내</li> <li>• 일반장애인 : 10만원 이내</li> </ul>
익산	조은의료기	446-66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20만원 이내</li> <li>- (1순위) 수급자 : 본인부담금 10%</li> <li>- (2순위) 차상위 : 본인부담금 20%</li> <li>- (3순위) 일반장애인 : 본인부담금 50%</li> </ul>
정읍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	857-44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30만원 이내</li> <li>- 수급자장애인 : 본인부담금 10%</li> <li>- 일반장애인 : 본인부담금 50%</li> </ul>
남원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625-1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20만원 이내</li> <li>- 수급자장애인 : 본인부담금 10%</li> <li>- 차상위장애인 : 본인부담금 20%</li> <li>- 일반장애인 : 본인부담금 50%</li> </ul>
김제	새한의료기	546-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 차상위 : 20만원 이내</li> <li>• 일반장애인 : 10만원 이내</li> </ul>
완주	완주군장애인복지관	261-78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30만원 이내</li> <li>- 수급자 : 본인부담금 외장재 10%</li> <li>- 차상위 : 본인부담금 내장재 15%, 외장재 15%</li> <li>- 120% 초과계층 : 본인부담금 내장재 20%, 외장재 20%</li> </ul>
진안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진안군지회	432-1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 장애인 : 20만원 이내</li> <li>• 일반장애인 : 10만원 이내</li> </ul>
무주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	324-9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장애인 : 30만원 이내</li> </ul>
장수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장수군지회	353-2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장애인 : 20만원 이내</li> </ul>
순창	순창건강의료기	652-7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20만원 이내</li> </ul>
	동아의료기	0507-1422-71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장애인 : 10만원 이내</li> </ul>
	만물의료기	652-1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조례에 전동보조기기지원을 받은 자 : 10만원 이내</li> </ul>
부안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회	0507-1392-14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 장애인 : 30만원 이내</li> <li>• 일반장애인 : 15만원 이내</li> </ul>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복지관명	소재지	연락처	누리집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77	222-9999	www.jbwcor.kr
고창군장애인복지관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88-9	562-3777	www.gdwc.or.kr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3길 37	466-7981	www.gs1004.or.kr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제시 갈공길 28	542-9500	www.grwc.or.kr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남원시 이백면 닭뫼안길 87	635-1544	www.namwonrc.or.kr
무주군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25	322-1252	www.mujubokji.or.kr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134	580-7600	www.buan.or.kr
순창군장애인복지관	순창군 순창읍 경천1로 126-17	653-9395	www.scrccb.or.kr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완주군 봉동읍 낙평장기로 22	261-7801	www.wanju.or.kr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익산시 인북로 21	837-7300	www.iksanjb.or.kr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장수군 장수읍 노하3길 16	353-8288	www.jadwc.or.kr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	229-0061	www.jwcd.or.kr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읍시 수성1로 58	539-6677	www.jjb.or.kr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89-1	432-8871	www.jinanrc.or.kr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협회·단체

유형	협회명	소재지	연락처
도 협회 (단체)	사) 전북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21-15	288-4321
	사) 전북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전주시 덕진구 학산길 36-8	282-3880
	사) 전북특별자치도척수장애인협회	전주시 덕진구 송천3길 14	286-3337
	사) 한국농아인협회 전북특별자치도협회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37, 6층	228-1804
	사)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전북협회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21-15	288-8400
	사) 전북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77-23	274-9999
	사)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재활협회	전주시 덕진구 사근1길 57. 2층 203호	243-6478
	사) 전북장애인정보문화협회	전주시 완산구 관선4길 26-24	251-7733
	사) 장애인인권연대	전주시 완산구 용산마을길 16-4	1688-6754
	사)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21-15	227-0992
IL	사) 꿈드래장애인협회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255-0049
	사) 희망드림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40. 206호	275-8826
	사) 다온복지센터	전주시 완산구 만내4길 6-23	229-1988
	사)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10. 3층	236-8533
	전북장애인연맹	익산시 익산대로 191. 흥국생명 104호	855-7269
	사) 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전주시 덕진구 아종로 136. 효진빌딩 1층	247-1507
	사)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42. 반석빌딩 5층	285-5538
	사)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20-22	237-2765
	사) 라엘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58. 2층	221-0158
	사) 장애인인권연대 군산지회 (세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군산시 칠성안2길 94-9	464-8377
부모조직	사) 한두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고창군 고창읍 월곡공원2길 28	561-2337
	사) 늘사랑 (늘사랑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191. 흥국생명 104호	855-7269
	사) 전북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77-23	274-9999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회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011-5	224-0644
장애인 복지관	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전주시 완산구 관선4길 26-24	232-1256
	사) 전라북도장애인부모회	전주시 완산구 계룡산길 44-8	224-6678

##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기관명	주소	연락처
사)전북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부설)전복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 공공후견법인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77-23	274-9999
사)전북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전주시지부 부설)전주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 공동생활가정함께하는벗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77-23	273-0303
사)전북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부설)남원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 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	남원시 금하정2길 82, 1층 (금동 401-5)	625-2255
사)전북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부안군지부 부설)부안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150, 반다비체육센터 2층	584-2921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수행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전북 (전주, 익산, 군산 이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30-14 (성덕동 477)	903-0003
전주	사) 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장애인자립전환사업단	전주시 아종로 136. 효진빌딩 2층	247-8275
익산	사) 늘사랑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191. 1층	070-4651-0454
군산	사회복지법인 나눔세상 더숨99지원센터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71	464-9944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구분	지역	협회명	주소	전화	생산/일기공
근로	부안	바다의향기	부안군 부안읍 봉두길 52	583-0035	조미김, 김자반, 해조류
	완주	완주떡메마을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20	263-8242	떡류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작업장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77	225-4444	인쇄, 행정봉투/ 쓰레기봉투
	전주	채움	전주시 덕진구 원화전1길 57-55(제2동)	628-9319	종이가방
	고창	샘터자리	고창군 고창읍 성두길 20	563-4455	문서화일/ 기타 부품 조립
	군산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	군산시 대야면 동중길 42-8	452-0911	양말, 장갑
	군산	자윤보호작업장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122, 1호	453-8161	마스크, 점보롤화장지
	김제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	김제시 갈공길 28	542-7282	물티슈
	무주	반디누리작업장	무주군 무주읍 교동1길 11	322-9907	두부, 콩나물
	완주	행복한집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93-4	263-0493	누룽지/망사포대
	완주	완주군희망발전소1호점	완주군 봉동읍 낙평신월1길 16	262-1600	현수막, 장갑 / 소독
	완주	완주군희망발전소2호점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654	262-9115	조미김, 해조류
	완주	생강골장애인보호작업장	완주군 봉동읍 보상길 59	263-6666	애견 수제간식/ 기타 조립
	익산	전북보성원자활자립장	익산시 서동로46길 41	835-1757	안마/자압서비스
	익산	동그라미플러스	익산시 쌍능길 135-7	831-7350	육포, 목공예
보호	익산	해피드림	익산시 덕기길 77	839-5491	제과제빵, 판촉물인쇄, 사무용 의자
	익산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익산시 약촌로 22	838-7748	세탁
	익산	라온보호작업장	익산시 익산대로27길 132(현영동)	855-5501	판촉물 인쇄,현수막 일반세탁/ 문구 소포장
	임실	임실군장애인보호작업장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40-1	643-8653	
	장수	장수군장애인보호작업장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08-9	351-9919	옹기, 구운소금
	전주	동암자활자립장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75	231-6666	두부, 자동차부품등
	전주	위드	전주시 덕진구 원화전1길 57-55	244-6479	복사용지, 쇼핑백
	전주	더불어삶	전주시 덕진구 서당길 37	214-0789	화장지류
	전주	더팩토리	전주시 덕진구 무심지2길 10-3, 1층	278-8908	블라인드,커튼, 복사용지 / 의류
	정읍	자애자립장	정읍시 고부면 만수길 52	536-1444	버섯, 비누 / 기타
	정읍	만복보호작업장	정읍시 감곡면 금평로 26-59	543-4743	참기름·들기름 / 조립
	진안	굿데이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81-7	433-7070	제과제빵, 홍삼제품
판매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익산시 평동로14길 1	856-2646	www.jbgom.com
	고창	고창군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108-4	923-9910	
	군산	모드니직업적응훈련센터	군산시 쌍천로 43	454-8500	
	김제	김제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김제시 갈공길 24-14	770-8510	
	전주	덕진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전주시 덕진구 사근1길 57, 203호	714-2824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전주	사) 다온평생교육원	전주시 완산구 맘내4길 6-23	229-1988
	사)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등불장애인평생교육원	전주시 완산구 흥선1길 103층	236-8533
	전주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전주시 덕진구 아종로 136. 3층	243-7809
	사) 새누장애인평생교육원	전주시 덕진구 아종로 136. 3층	243-7809
	라엘장애인평생교육원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58. 2층	221-0518
장수	사랑뜰장애인평생교육원	장수군 번암면 지지로 62	353-0498
익산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익산시 서동로 89	853-7008
김제	김제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김제시 갈공길 24-14 (서암동)	770-8510
군산	산돌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군산시 월명안길 1	446-4460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군산시 월명안길 1	461-446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군산	군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군산시 성산면 강변로 459 장애인체육관 1층	454-5920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전주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공연장동 1층)	280-4855~8

##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지역	기관명	연락처
고창	고창군장애인복지관	562-3777
	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합니다	465-6539
군산	행복나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910-8800
	유한회사 좋은이웃	465-1876
김제	사회적협동조합 보담	546-9774
	마음소리언어심리센터	543-3500
남원	한국장애인인지원사회적협동조합	542-7942
	유) 남원아동발달센터	626-4875
부안	사회적협동조합 모네	581-4588
	사회적협동조합 이룸	652-2233
완주	마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263-0527
	완주군평생교육아카데미	229-2019
익산	에이블플러스방과후활동센터	010-6575-5435
	마음나무(인성상담교육협회익산지부)	854-3004
임실	꿈마루협동조합 꿈마루돌봄센터	832-4800
	사단법인 전라문화교육협회 임실지부	644-1409
장수	해맑은장수청소년발달장애인학생방과후활동센터	351-5475
	나눔과행복사회적협동조합 장수군지부	352-7297
전주	전라북도특수심리&운동발달센터	224-3242
진안	비영리민간단체 보듬	432-1202

##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고창	고창군장애인복지관 유) 좋은이웃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88-9 군산시 공단대로 454. 삼영빌딩 2층 (나운동)	562-3777 465-1876
군산	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자윤	군산시 칠성로 186 (소룡동) 군산시 성산면 활동길 13. 1층	465-6539 465-8161
	행복나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군산시 미장안길 60. 5동 203호 (미장동)	910-8800
김제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적협동조합 보담	김제시 갈공길 28 (서암동) 김제시 요천서1길 61-7 (요촌동)	070-4832-6380 546-9774
	한국장애인지원사회적협동조합	김제시 중앙로 147. 3층(요촌동)	542-7942
남원	유) 남원아동발달센터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남원시 시청북로 9 (도통동) 남원시 금하정2길 82. 이노빌 1층 (금동)	626-4875 632-4321
무주	무주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즐거운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11 무주군 무주읍 향학로 85	324-3227 925-9844
부안	사회적협동조합 모네	부안군 동진면 고마제로 5	581-4588
순창	사회적협동조합 이룸 디앤알운동발달센터	순창읍 순화로 25. 1층 완주군 삼례읍 신기길 5-1. 3층	652-2233 070-7607-4927
완주	마루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 마음꽃복지센터협동조합	완주군 봉동읍 낙평신월1길 5-5 완주군 삼례읍 신포1길 22. 301호	263-0527 263-0078
	완주군평생교육아카데미	완주군 구이면 덕천구암길 65	229-2019
익산	꿈마루협동조합 꿈마루돌봄센터 새소망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익산시 고봉로 34길 5-4. 301호 (영등동) 익산시 인북로 5길 8-1. 4층 (남중동)	832-4804 854-1175
	에이블플러스 주간활동센터 원광주간활동센터	익산시 중앙로13길 13-3. 1층 (마동)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201호 (창인동 1가)	010-6575-5435 858-9271
	한마음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137-1. 9층 (창인동)	851-5660
임실	임실군발달장애인 하모니주간활동센터 좋은나무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임실군 임실읍 중동로 38. 2층 4호 임실군 임실읍 봉황5길 11-2	643-1113 644-9222
장수	나눔과행복사회적협동조합 장수군지부 사) 참좋은벗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169. 2층 / 장천로 222-2 1층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24. 세진빌딩 7층	352-7297 231-0079
	사) 담장너머 아이비주간활동서비스센터 사) 더나눔	전주시 덕진구 틀못4길 31. 3층 / 원장동길 111-8. 2층 (장동) 전주시 완산구 평화9길 12	070-4411-4418 717-8111
	유) 우리에듀 나무의꿈사회적협동조합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656. 2층 202호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254. 6층	243-3213 278-6742
전주	느루걸음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 6길 10-5. 1층 전주시 덕진구 원반월안길 19-4 (반월동)	272-9780 211-6013
	동행사회적협동조합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6길 19 (서신동) 전주시 덕진구 호성1길 33-10. 3층 303호 (호성동)	212-3100 243-2626
	전라북도특수심리&운동발달센터 좋은이웃사회적협동조합	전주시 덕진구 안골3길 20. 1층, 2층, 4층 / 백제대로 709. 1~2층 (인후동 2가)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12. 4층 (진북동)	224-3242 232-3400
	희망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사) 더마루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 17. B101호-401호 정읍시 샘골로 81 (수성동)	226-8821 538-1000
정읍	행복누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정읍시 수성1로 51 (수성동)	541-3700
진안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보듬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515-5 진안군 진안읍 대광1길 2. 2층	432-9702 432-1202

## 전북특별자치도 최종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유형	지역	기관명	연락처
임실		아람센터	
무주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322-1252
익산		해달별	832-1957
군산		유한회사 좋은이웃	466-1677
장수	주간 그룹 1:1	나눔과행복사회적협동조합 장수군지부	352-7297
진안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070-7007-5611
김제		한국장애인지원사회적협동조합	542-7942
완주		완주군평생교육아카데미	229-2019
익산		다가치익산최종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제공기관	855-1175
전주		전라북도특수심리&운동발달센터	224-3242
남원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635-1544
진안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432-8871
익산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070-5088-3450
완주	주간 개별 1:1	사단법인전라문화교육협회	226-2026
김제		한국장애인지원사회적협동조합	542-7942
전주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	243-2626
군산		자윤 군산시 최종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	465-8161
군산	24시간 개별 1:1	자윤 군산시 최종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	465-8161
전주		별빛정원	243-1957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주간이용 시설

지역	시설명	상세 주소	전화번호
고창	고창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고창읍 전봉준로 108-4	923-9920
	구세군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군산시 회현면 남군산로 332-45	466-6098
	군산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군산시 설림길 25	466-0666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군산시 칠성안3길 37	466-7971
군산	산돌장애인주간보호센터	군산시 월명안길 1	462-4461
	희망나눔주간보호센터	군산시 죽성로 7. 동일빌딩 302호	468-6032
	김제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이용센터	김제시 갈공길 28	542-9500
	남원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남원시 이백면 닭归안길 87	635-1544
남원	사랑과행복이가득한우리집	남원시 이백면 초촌길 75-9	636-6204
	우리집	남원시 이백면 초촌길 75-11	626-6209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134	580-7680
완주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완주군 봉동읍 낙평장기로 22	070-5153-9043
	새소망주간보호센터	익산시 인북로 5길 8-1	852-1174
	푸른솔주간이용시설	익산시 하왕길 98-5	833-3367
	한마음주간이용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30길 11-1	858-4858
익산	해바라기주간보호센터	익산시 서동로 29길 37-3	842-8819
	장수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수군 장수읍 노하3길 16	070-4657-2111
	새롬장애인주간이용센터	전주시 덕진구 중상보로 34	246-1512
	손수레주간보호센터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4길 8-6	237-0082
전주	전북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주시 덕진구 학산길 36-8	282-4344
	정다운주간보호센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9	274-0095
	해냄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주시 덕진구 호성1길 33-10. 301호	223-8488
	희망드림주간보호센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40. 206호	904-8833
덕진	꿈마을주간보호센터	전주시 완산구 종인1길 108-91	227-0644
	더나눔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9길 12. 4층	903-8111
	전라북도장애인부모회 부설 주간보호센터	전주시 완산구 계룡산길 44-8	224-6679
	전주베다니주간보호센타	전주시 완산구 능안자구길 134-11	223-2592
전주 완산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	229-0630
	해찬나래주간보호센터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011-5	224-0644
	희망해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주시 완산구 안행7길 13	229-6625
	사단법인 더마루	정읍시 수성1로 46-7	538-1000
정읍	울림장애인주간이용센터	정읍시 상동중앙로 24-32	536-3009
	정읍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읍시 수성1로 58	539-6690
	푸른나래주간이용센터	정읍시 수성1로 51	532-2220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89-1	432-8871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

지원 시설				
지역	시설명	소재지	연락처	운영법인
전주	손수레공동생활가정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2길 5-6. 희성빌라 101호	227-0992	사)전북장애인손수레 자립생활협회
	함께하는 벗	전주시 완산구 간남로 52. 원산파크@ 101동 610호	231-0302	사)한국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
	희망해 1호	전주시 완산구 강당1길 2. 201호 202호	901-0625	사단)바른복지사무소
	희망해 2호	전주시 완산구 강당2길 14. 대종낙원맨션 다동 307호	901-0625	사단)바른복지사무소
군산	해오름 1호	군산시 해망로 447. 105동 101호 (소룡동, 성원쌍떼빌@)	070-7749-3802	복)해오름복지재단
	해오름 2호	군산시 서당길 11. 102동 104호 (구암동, 현대@)	451-4516	복)해오름복지재단
	해나지도	군산시 두란뜰2길 8. (사정동, 금호타운@)	466-2510	복)해오름복지재단
	해바라기	군산시 대학로 114-1. 6동 102호 (금광동, 삼성@)	070-8148-0911	복)해오름복지재단
익산	나현네집	군산시 나운로 39. 204동 406호 (나운동, 현대2차@)	466-7981	복)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
	21더숨	군산시 백토로 93. 7동 203호 (문화동, 삼성@)	464-9943	복)나눔세상
	동그라미은혜의집	익산시 무왕로 22길 27. 3동 406호 (아름드리@)	835-7301	복)중도원
	동그라미희망의집	익산시 무왕로 22길 27. 4동 105호 (아름드리@)	835-7302	복)중도원
정읍	자애해피홈	정읍시 총정로 531-3. 105동 601호 (공평동, 목련@)	536-1451	복)자애복지재단
	남원복지관 부설공동생활가정	남원시 오들 1길 86. 306동 502호 (부영3차 @)	635-1544	복)한기장복지재단
	기쁨의동산	완주군 고산면 원성재길 57-11	263-8060	복)은혜동산
	은혜의집	진안군 진안읍 원반월안길 39-5	433-5885	복)반월복지재단
고창	아름다운마을 공동생활가정	고창군 상하면 선운대로 422	0507-1354-6357	복)아름다운마을
	작은나눔의집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 5길 17	247-6337	
	라파쉼터 공동생활가정	전주시 덕진구 호성1길 16. 5동 502호(호성우신@)	010-2057-5899	개인 운영
김제	하울	김제시 금구면 황토로 177	544-9756	
미지원 시설				
지역	시설명	소재지	연락처	운영법인
전주	작은나눔의집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 5길 17	247-6337	
	라파쉼터 공동생활가정	전주시 덕진구 호성1길 16. 5동 502호(호성우신@)	010-2057-5899	개인 운영
	하울	김제시 금구면 황토로 177	544-9756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거주시설(법인)

지역	사회복지 법인명	시설명	장애유형	소재지	연락처
고창	아름다운마을	아름다운마을	지적장애	고창군 상하면 풍춘길 8	564-7332
	고창 우리누리	느티나무	지적장애	고창군 성내면 광주동길 184-23	561-5501
군산	구세군복지재단	구세군군산목양원	지적, 자폐성	군산시 회현면 남군산로 332-45	466-6088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나포길벗공동체	지적장애	군산시 나포면 철새로 1127-19	453-3993
김제	나눔세상	더숨99지원센터	지적장애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71	464-9944
	유한복지재단	요한의집	지적장애	김제시 백학동 181-6	547-9464
남원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중증실비	남원시 주천면 웅치윗길 27	635-5004
	풍악복지재단	편한세상	중증장애	남원시 대산면 대곡신계길 369	634-9988
무주	하은복지재단	하은의집	지적장애	무주군 부남면 상평당길 41	322-6448
부안	한울안	동근마음보금자리	중증장애	부안군 주산면 화봉길 8-18	584-1307
순창	어깨동무복지재단	함께사는마을	지적장애	순창군 쌍치면 용전길 116-142	653-0495
	원산원	주향의집	지적장애	순창군 팔덕면 팔덕로 460-31	653-8183
완주	경인정원	로뎀나무	지적장애	순창군 금과면 방계로 33-2	652-2393
	국제원	국제재활원	지체, 뇌병변	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157-11	263-4352
전주	국제원	새힘원	중증장애	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157-19	263-4911
	어깨동무복지재단	함께사는집	중증장애	완주군 비봉면 대치로 369-2	261-0493
임실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무지개가족	중증장애	완주군 소양면 원해월길 31-6	244-8120
	은혜동산	은혜의동산	지체, 뇌병변	완주군 소양면 송광새터 16-12	245-0691
진안	베데스다의집	베데스다의집	지적, 자폐성	완주군 운주면 원구제길 10-5	261-5253
	머릿돌 다애	다애공동체	지적장애	완주군 봉동읍 제촌길 83-5	262-3927
진안	한기장 복지재단	예수재활원	지적, 자폐성	완주군 소양면 원암로 199	244-7660
	동암	동암재활원	지체-성인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75	222-4444
진안	송광	금선백련마을	중증장애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1길 18-3	236-0550
	소화자매원 (광주소재)	소화진달네집	지적장애 女	전주시 완산구 우림로 595-32	222-2786
진안	평안한복지	평안의집	지적장애	전주시 완산구 선너며2길 29-15	282-7728
	크리스챤복지재단	로뎀하우스	지적장애	임실군 신평면 석등슬치로 491-7	642-1881
진안	낮은자리	흰마실	지적장애	진안군 백운면 윤기길 4-41	433-2200

지역	사회복지 법인명	시설명	장애유형	소재지	연락처
익산	창혜복지재단	창혜원	지적장애	익산시 덕기길 77	839-5412
	창혜복지재단	햇살정원	중증	익산시 익산대로74길 4	833-5471
익산	창혜복지재단	청록원	중증	익산시 덕기길 77	839-5452
	전북보성원	전북보성원	시각, 중증	익산시 서동로 46길 41	835-1752
익산	전북보성원	덕암	중증	익산시 판문1길 26	841-5350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작은자매의집	지적, 자폐성	익산시 하나로 15길 141	834-3555
익산	사랑복지재단	사랑원	지적장애	익산시 삼기면 죽신길 89	858-3033
	종도원	동그라미	지적장애	익산시 쌍능길 135-7	835-7300
익산	종도원	맑은집	장애-영유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861-9950
	종도원	밝은집	중증실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861-9953
익산	종도원	훈훈한집	지적·성인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861-9957
	예담 복지	예담	지적장애	익산시 서동로 46길 22	831-7003
정읍	자애복지재단	자애원	지적, 자폐성	정읍시 고부면 만수길 52	536-1451
	자애복지재단	자애두승원	중증장애	정읍시 고부면 만수길 52	536-1453
정읍	만복원	만복원	지적장애	정읍시 감곡면 금평로 26-63	545-4740
	평화	정읍천사마을	지적장애	정읍시 신태인읍 원백산1길 85	571-1186
정읍	정읍나눔의집	나눔빌	지적, 자폐성	정읍시 상신경 1길 98	536-9311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거주시설(개인)

지역	시설명	장애유형	소재지	연락처
정읍	행복의집	지적, 자폐성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1290	571-3620
김제	지구촌마을	지적장애	김제시 모리생길 58-73	542-5844
	샤론의 집	지적장애	김제시 용지면 용지로 691-7	542-9466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지역	시설명	소재지	연락처
전주	한마음단기보호센터	전주시 완산구 계룡산길 44-8	224-6679
익산	새소망단기보호시설	익산시 중앙로5길 61-11	852-1175

| 전북특별자치도 |

## 아하(A-HA) 장애인 복지정보안내

---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30-14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Tel : 063-903-0003

---



| 전북특별자치도 |

## 아하(A-HA) 장애인 복지정보안내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30-14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Tel : 063-903-0003